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이혜영 · 방세라 · 이수연 · 원영미 · 장윤용



발행



장애인교육 **모든다**

지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발행



장애인교육 **모을다**

지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서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7년이 지났다. 이 법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등의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을 느낀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5년 동안 헌신적인 사회 운동과 연대를 통해 어렵게 만든 법이다.

17년이 지난 지금 특수교육법의 교육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이후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인 등)이나 특수교사가 교육지원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극단적인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극단적인 인권 문제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에서는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예비특수교사 등도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교육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을 풀어서 쓴 것이다.

학교나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면 진단평가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학교에 배치가 된다. 특수교육은 0세인 영아기부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통합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수학교는 영아와 유치원 과정만 있는 특수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전공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교육은 영아기부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정, 병원 등에서도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아기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일반학교 일반학급(통합학급), 병원, 가정에서 순회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발달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영아기부터 특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단계부터 학교에 배치된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 당하거나 차별을 당했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은 국내·외 협약과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하는 데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 집필하게 되었다.

1장은 방세라 학부모(건강장애 및 중증식품알레르기 학부모 모임)와 이해영 대표(장애인교육아올다)가 집필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거나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20명을 선정하여 개별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 조사에서 수집한 사례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 기본권 침해와 차별 사례가 무엇인지 분류하였다. 1장을 통해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실제 경험한 사례가 교육기본권 침해인지, 교육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분류표, 교육권 침해 사례, 교육권 침해 사례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이수연 공익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가 집필하였다. 국내·외 협약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기본권 침해와 교육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판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장을 읽으면서 자신 또는 자녀나 학생이 경험한 학교에서의 문제나 사례가 교육 기본권 침해나 교육차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한 뒤에 2장에서 나오는 권리 구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부당한 경험을 하였을 때 참고 넘길 수도 있지만 교육기본권 침해나 교육차별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장은 교육 관련 권리 등, 침해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은 원영미 박사(장애인복지)가 집필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의 탄생은 큰 축복이다. 하지만 질병 또는 또래와 다르게 발달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 복지부, 교육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복지 제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장은 영아기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3장은 장애인 등록, 소득보장, 보육 및 교육, 의료 및 재활, 돌봄, 가족 및 부모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4장은 장윤용 박사(교육학)가 집필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에서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등에서 보장하고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절차와 사전 청문 절차인 갈등 중재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례도 소개되어 있다. 부모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도 살펴보았다. 4장은 미국의 특수교육 관련법, 정당 절차에 대한 권리, 뉴욕주에서의 절차적 보호 통지, 미국의 특수교육 판례, 부모 주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관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이해영 대표(장애인교육아울다)가 정리하였다. 가이드북 초안에 대한 국회 중간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1장에 제시된 교육 기본권 침해나 교육차별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의 입장이 아닌 특수교사, 법률가, 장애유형이 다른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목록에서는 교육부,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연구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최신 정보나 특수교육 통계 등 전국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본권 침해나 교육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인 시민사회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1장부터 4장에서 참고한 주요 참고 문헌이 실어져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은 국회 중간 간담회 결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주요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북은 장애 고위험 영아부터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의 교육권과 권리 구제 절차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외국에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영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식품알레르기 및 투렛(뚜렛)장애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하였다.

가이드북이 한정된 예산과 시간 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채워가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 그리고 예비 특수교사나 현장의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 되길 바란다. 이 가이드북이 한 명도 소외 당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귀한 시간을 내어 개별 면담 조사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들, 그리고 국회 중간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참여자들과 원고를 검토해 주신 함수연 원로 특수교사, 허영진 특수교사, 최은원 박사(교육학), 김치훈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과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해 주신 아름다운재단과 국회 간담회를 지원해 주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 대표의원, 강경숙 책임 연구의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 대표와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집필해 주신 방세라 학부모, 이수연 공익 변호사, 원영미 박사, 장운용 박사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혜영 올림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목차

서문 / 3

제1장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 9

제2장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절차 / 33

제3장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복지 지원제도 / 57

제4장 미국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 / 79

부록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국회 간담회 요약자료 / 103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 109

주요 참고 문헌 / 111

1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1장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1.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분류

1) 사례 유형 분류표

장애인교육아울다는 학교에 재학 중인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20명 개별 면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신청자 모집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총 40여명의 신청 접수가 들어왔고 선착순 20명에 대한 개별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권 침해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교육권 침해 유형은 국가인권위원회(2014, 2018)와 장애인교육아울다(2025)의 교육권 침해 유형을 재구성하여 <표 I-1>과 같이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표 I-1>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분류표

대분류	분류		침해 유형	출처	
	중분류	소분류			
교육 기본권 침해	학교폭력	폭력	구타	주혜영, 박원희(2006) 이현희, 유숙렬(2012)	
			체벌		
		성폭력	성폭행	정승민(2012)	
			성추행		
		언어폭력	놀림	이현희, 유숙렬(2012) 송영범 외(2013)	
			비하		
			협박	한국교육개발원 (2012) 송영범 외(2013)	
			욕설		
		괴롭힘	금품갈취	주혜영, 박원희(2006) 이현희, 유숙렬(2012) 한국교육개발원 (2012)	
			과도한 장난		
			강제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휴대폰 폭력	김선애(2003)
				인터넷폭력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	사적 공간 침해	김영지 외(2013)	
초상권 침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침해	교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	소유물 침해	안동현(2000) 주혜영, 박원희(2006)
			개인정보 유출	
			장기결석 방치	
	교육여건 미개선	교육여건 미개선	교육적 무관심	장애인교육아올다(2025)
			과도한 치료비 부담 대체식·제거식 지원 거부	
			급식비 및 간식비 미지원	
			의료적·교육적 기회의 접근 미개선	
	차별	교육기회차 별	돌봄 지원의 문제	장애인교육아올다(2025)
			입학거부	
			분리교육강요	
			학업시수위반	
			교내활동배제(I-4)	
			교외활동배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시험참여배제	국가인권위원회(2010) 김영지 외(2013)	
		편의시설설치거부	박옥순(2002) 장애인교육권연대(2004) 안민석 의원실(2007) 국가인권위원회(2010)	
		통학지원거부		
		지원인력제공거부		
		교수학습자료제공거부		
		의사소통제공거부		
정보접근제공거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	가족 상담, 가족지원 등 거부	장애인교육아올다(2025)		
	수험편의비고려	박옥순(2002) 안민석의원실(2007) 김주영(2009) 국가인권위원회 (2010)		
	평가과정비고려			
	교육과정운영비고려			
행정적조치비고려				

2)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면담 조사에서 수집된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분석은 아래 <표 I-2>와 같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는 총 87건이다. 교육기본권침해 사례 중 언어폭력 4건, 괴롭힘 2건, 교육적 방임 3건, 교육여건 미개선 13건으로 나타났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사례는 교육기회 차별 사례 9건, 정당한 편의 제공거부 29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27건으로 나타났다.

<표 I-2>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

교육권 침해 유형		교육권 침해 사례	건수
교육 기본권 침해	언어폭력	반 친구들의 언어폭력(1)	4
		담임교사의 언어폭력(2)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언어폭력(1)	
	괴롭힘	특수학급에서 왕따(1)	2
		유치원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반친구들 왕따(1)	
	교육적 방임	장애영아기 교육적 지원 문제(1)	3
		일반학급 수업 지원 문제(1)	
		수업 시간 교출 등 문제(1)	
	교육여건 미개선	과도한 치료비 부담(5)	13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적 지원과 교육권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1)	
대체식.제거식 지원 거부(1)			
급식비 및 간식비 미지원(1)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적.교육적 기회의 접근 미개선(2)			
돌봄 지원의 문제(3)			
교육기회차별	학교 수업에서 배제(1)	9	
	현장체험학습 배제(3)		
	생존수영 배제(1)		
	자리 배치 활동에서 배제(1)		
	공개수업에서 방치(1)		
	교외 체육활동 기회 배제(1)		
	해외 견학 배제(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과밀학급 문제(2)	29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11)	
		이너 휠체어 지원 문제(1)	
		휠체어 경사로와 지붕 미설치(1)	
		장애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미제공(1)	
		장애영아 교육적 지원 정보 접근의 어려움(3)	
		수어통역사 미배치(1)	
		교사들의 낮은 장애인식(5)	
		가족지원 문제(자살충동)(3)	
		비수도권 거주 장애아동 지원 문제(1)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먼 거리 학교 배치(1)	28	
	중도중복장애 진단 문제(1)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설문조사(1)		

	개별화건강지원계획 문제(1)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문제(8) 개별화교육 문제(1) 과목별 수업 준비물 안내 문제(1)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수업 문제(1) 특수교사와의 소통 문제(1) 학교생활 안내와 피드백 문제(1) 심리안정실 지원 문제(1) 장애 특성과 수준에 맞는 평가과정 비고려(1) 방학때마다 바뀌는 교육환경(1) 중복장애아동 학교 배치 문제(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전의 문제(1) 응급상황시 책임없음에 대한 학부모 각서 요구(1) 형식적인 진로와 특성 계발 교육(1)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1) 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 미제공(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할 문제(1)	
--	--	--

2.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1) 교육 기본권 침해

(1) 언어폭력

학교에서 장애청소년은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동료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교육 기본권 침해 중 언어폭력의 사례는 아래 <표 I- 3>과 같다.

<표 I- 3> 언어폭력 사례

언어폭력 유형	언어폭력 사례	기초 정보
반 친구들의 언어폭력	반 친구들이 옷차림을 가지고 교칙에 어긋난다고(거짓말을 하며) 힘들게 함.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담임교사의 언어폭력	담임교사가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 “힘으로 하겠다” 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 야외활동 시 이탈 우려를 이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유로 “아이를 끈으로 묶겠다” 고 발언함.	자폐성장애, 뇌전증)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가 “아이를 때려서 혼계를 할 수 없으니 집에서 충분히 혼을 내서 아이가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오라” 고 말함.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 성장애, 느린학습자)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언어폭력	특수교사가(악의 없이)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대변 못 가리는 00이” 라고 지칭함. 특수교육 실무사도 “대소변 처리하러 학교에 왔나?”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말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2) 괴롭힘

학교에서 장애 청소년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와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교육 기본권 침해 중 괴롭힘의 사례는 아래 <표 I- 4>와 같다.

<표 I - 4> 괴롭힘 사례

괴롭힘 유형	괴롭힘 사례	기초 정보
특수학급에서 왕따	장애학생한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늘 부메랑처럼 모든 것이 다시 장애학생한테 돌아옴. 예를 들어 “너는 엄마가 여기 가지 말래. 그러니 음료수 못 준다”. “속옷은 내가 내려야지. 연습해 와.”, “화장실 자주 간다.”, “00이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 “기다려. 화장실 가려면 보조 선생님 오셔야 해.”, “너는 엄마가 공부시켜달라고 했으니까 1반에서 평가지 풀어.”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경계선 지능)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반 친구들과 왕따	유치원 때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반 애들을 선동해서 왕따시킴. 담임 교사가 아이를 구석에 밀어 넣으며 위협 행동을 함. 다음 해에 주변 유치원과 교사들이 입소를 거부함.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 장애, 느린학습자)

(3) 교육적 방입

장애영아기 교육지원 문제, 일반학급 수업지원 문제,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외출(교출)문제는 교육 기본권 침해 중 교육적 방입에 해당한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장애아동의 교육 기본권 침해 중 교육적 방입 사례는 아래 <표 I- 5>와 같다.

<표 I- 5> 교육적 방입 사례

교육적 방입 유형	교육적 방입 사례	기초 정보
장애 영아기 교육적 지원 문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음. 유치원 가기 전에 4세 때 어디를 보내나 고민하고 있었음. 유치원 교사인 친구에게 들었음. 발달재활바우처만 20개월 전부터 받았음. 어린이집 다니면서 치료실만 병행하다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공교육 알아보다가 알게 됐음.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일반학급 수업 지원 문제	일반학급에서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함. 교수적 수정을 통해 학습지 등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없을 땐 장애학생이 온전히 버텨야 함.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외출(교출) 등 문제	수업이 힘들 때는 가끔 교실 밖 외출(교출)도 있음.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고 1층 음수대 등 특정 장소를 감. 안전상의 문제와 다른 친구들 수업 방해 등이 있어서 걱정됨.	

(4) 교육여건 미개선 사례

과도한 치료비 부담,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적 지원과 교육권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 대체식 및 제거식 지원 거부, 급식비 및 간식비 미지원, 비수도권 지역 아동의 의료 및 교육적 기회 문제, 돌봄 문제는 교육기본권 침해 중 교육여건 미개선에 해당한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교육 기본권 침해 중 교육여건 미개선 사례는 아래 <표 I- 6>과 같다.

<표 I - 6> 교육여건 미개선 사례

교육여건 미개선 유형	사례	기초 정보
과도한 치료비 부담	월 치료비 200만원. 바우처 지원금은 총합 29만원(자부담 4만8천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월 치료비 80만원. 유류비 등 총 월 100만원 지출. 바우처 지원금과 청각장애인지원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청각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 관련 1회 진료마다 검사비, 진단비, 약값으로 40만원 정도 지출.	초등학생 (초등학교 일반학급, 중증식품알레르 기)
	교육청 지원 월 14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월 16만원 지원 받고 있음. 방과후 교외 수업 지원 매월 14만원 지원 받음. 사비로 100만원 정도 치료를 받고 있음. 느린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저렴한 치료비가 복지관, 비영리병원의 경우 1회 수업시 1만원~2만원. 언어, 물리, 인지치료. 심한 곳은 대기가 7년임. 쉽게 수업을 받을 수가 없음. 기본이 1~2년 대기임. 사설 치료 센터가 1회에 6만원임. 사설센터를 일주일에 6번 다임. 일주일에 치료비가 40만원 정도 됨. 너무 힘들.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사설 치료비로 4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음. 인지치료, 언어치료, 감통치료, 도수치료는 사비로 하고 있고 교육청 바우처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하고 있음.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음. 낮(주간)병동 다니고 있음.	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하지 말아야 할 신빙성 없는 치료를 거의 다 했음.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 배우자와 맨날 집 한 채는 비용 쓴 것 같다고 얘기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중증식품알레르기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초등학생

<p>학교의 교육적 지원과 교육권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p>	<p>교육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알레르거나 학교 지원 관련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나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p>	<p>(초등학교 일반학급, 중증 식품 알레르기)</p>
<p>대체식, 제거식 지원 거부</p>	<p>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양교사에게 대체식과 제공식 제공 여부 문의했지만 재학생수가 많아 안된다는 답변 받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튀김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냉동 보관 후에 조리하여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위생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현재는 흰쌀밥과 김만 제공받고 있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일반학급, 중증식품알레르 기)</p>
<p>급식비 및 간식비 미지원</p>	<p>어린이집 중식과 간식을 모두 가정에서 만들어 보내고 있음. 식비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음.</p>	<p>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중증식품알레르 기, 사시)</p>
<p>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적·교육 적 기회의 접근 미개선</p>	<p>거주지가 지방(농어촌 지역)이라 대학병원 진료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임. 병원 검사 후에 결과 듣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2주 후에 또 가야하는 일이 너무 부담됨.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이 세 곳밖에는 되지 않아 입소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 대한 선택지도 없어서 홈스쿨링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까 고민함.</p>	<p>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중증식품알레르 기, 사시)</p>
<p>돌봄 지원의 문제</p>	<p>집에서 장애어린이집 거리가 차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릴 적에 일반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린이집에서 아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아이가 울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매일 전화를 함. 집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는 이동거리가 차로 50분 이상이라 영아 순회교육을 신청할 수 없었음. 근처에는 치료실도 없고 대기도 너무 길어서 바우처 사용도 할 수 없었음.</p>	<p>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p>
<p>돌봄 지원의 문제</p>	<p>활동지원사 2명 이외에도 외할머니, 이모들까지 있어야(가족까지 동원되어야) 장애아들 돌을 돌볼 수 있음.</p>	<p>고등학생 (첫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p> <p>중학생 (둘째, 중학교 특수학급,</p>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알레르기 아동 돌봄에 대한 강도가 높음. 돌봄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녀왔음. 아이들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고, 외출이나 놀이터에 나가서도 아이를 계속 주시해야 함. 친구들 집에 놀러가기도 어려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데도 한계가 있음. 보육수당을 늘리거나 돌봄선생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중증식품알레르기, 사시)
	현재 장애아 돌봄서비스 시간이 최대 한 달에 90시간인데, 치료실 다니다 보면 시간을 다 쓰게 되어 부모 중 한 명이 돌봐야 함. 돌봄선생님과의 관계가 갑과 을이 되고, 매칭도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음.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1) 교육기회차별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이 학교 수업에서 배제, 현장체험학습 배제, 생존수영 배제, 자리배치 활동에서 배제, 공개수업 방치, 교외 체육활동 기회 배제, 해외견학 배제 등을 당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중 교육기회차별에 해당한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중 교육기회차별 사례는 아래 <표 I- 7>과 같다.

<표 I- 7> 교육기회차별 사례

교육기회 차별 유형	교육기회차별 사례	기초 정보
학교 수업에서 배제	체육 시간이나 모둠 활동을 할 때 서투르고 느리다 보니 짝을 지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음. 체육 시간에서 배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현장체험학습 배제	현장체험학습에 석션을 하는 학생은 갈 수 없다고 함.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학교에 남아서 다른 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학교에서는 엄마가 따라가거나 체험학습을 안갔으면 한다고 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현장체험학습 집결 장소를 학교가 아니라 대공원, 수련원 등 집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정함. 실무사 선생님도 힘들다는 내색을 보이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음.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초등학교 때 외부활동을 산에서 함. 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없었음. 우리 아이를 위해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음.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생존수영 배제	생존수영을 한 번도 가지 못했음. 학교에 계속 요구를 하고, 지역신문에 기사도 내고 인터뷰도 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음. 학교에서는 둘째 아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장소를 정함. 할 수 없는 활동을 정하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 를 물어. “어떻게 데려가실 건가요?”, “생존수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 같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르친 거다.” 라고 말하니 “그런 의도가 없었다. 진정해라” 라는 말을 들음.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자리 배치 활동에서 배제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배치를 제비 뽑기로 하고 있음.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없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음.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공개수업에서 방치	공개수업에서 특수교사 선생님과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신경 쓰지 않음. 아이가 이니휠체어에 앉아 있다보니 방치되고 있었음. 공개수업 2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 시키지 않았음.	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교외 체육활동 기회 배제	장애인체육회의 ‘찾아가는 체육 수업’ 을 하고 싶었는데 특수선생님께서 다른 어머니들이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청할 수 없다고 함. 아이는 찾아가는 체육수업을 받고 싶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함.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해외견학 배제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서 학생들 해외 견학을 보내주는 데 장애학생들은 제외되었음.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면담을 함.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생길까 봐 제외 시킨 것임. 장애학생들도 해외 견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올 해부터 가게 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지적장애)

(2)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과밀학급 문제,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이니휠체어 지원 문제, 휠체어 경사로와 지붕 미설치, 수어통역사 미배치, 장애영아 교육적 지원 정보 접근 문제, 장애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미제공, 교사들의 낮은 장애인식, 가족지원 문제, 비수도권 거주 장애아동 지원 문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중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

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표 I - 8>과 같다.

<표 I - 8>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유형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	기초 정보
과밀학급 문제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이 8명임. 1명은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함. 실무사 1명, 보조교사 1명(특수교사와 수업을 진행함). 부담임1명, 특수교사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있음. 중증장애학생이 있기도 하고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함.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4세 때는 한 반에 장애아동이 6명이었음. 특수교사 1명, 실무사 1명, 자원봉사자가 지원했음. 그때는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그냥 잘 있겠거니 함.	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아이 혼자임. 방과후 특수교육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한 명이라 지원하기 어려우니 통합반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아라” 는 답변을 받음.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가 부족해서 신변처리 지원이 잘 되지 않음. 항상 소변이 새서 바지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저희 아이는 최중증임. 저희 아이 반에 장애학생들 3명 정도 기저귀 착용하고 있음. 선생님은 하루에도 한 두 번 실수하는 날이 있다고 기저귀 착용하라고 해서 하고 있음.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1명 밖에 없는 상황임. 1:1 지원이 필요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
	화장실에 예민한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신변처리인력 지원이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산소줄 끼고 있는 막내 아이 데리고 학교에 가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학교에 데려다 줌.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면서 다녔음.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느린학습자)
	휠체어 이용하는 아이는 3명이고, 현재 담임, 부담임, 실무사 선생님 3명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생김. 담임선생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뇌병변장애,

	<p>님 수업시간에는 교수권 침해 때문에 부담임선생님 없고, 실무사선생님 휴게시간이면 담임교사 혼자서 6명의 아이를 볼 수밖에 없음. 몸에 땀이 차도 휠체어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견뎌야 하고, 손을 쓸 수 없으니 활동을 할 수가 없음.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하루종일 자다가 오는 경우도 있음. 서류상의 인력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p>	<p>청각장애)</p>
	<p>전반적으로 발달이 또래 뇌병변장애아동 청소년과 달라서 볼 때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의 거부감이 있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p>
	<p>중학교에 입학하자 특수교사가 개인활동지원사를 학교에 투입하라고 제안함. 거절하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를 요청함. 중학교에 입학 후 신변처리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 요폐가 왔음. 학기 중에 7일 동안 소변줄을 했음. 하루 네 번 도뇨하라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약을 먹었음.</p>	<p>중학교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경계선 지능)</p>
	<p>아이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니 활동지원사를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학교측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 저에게 “저희 아이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고 함. 다른 아이는 활동지원사를 이미 쓰고 있다고 말하여 무언의 압박감을 느꼈음. 눈치가 보였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p>
	<p>특수학급에 있을 때 실무사 배정 시간만 좀 더 늘어도 아이가 좀 더 수업 참여나 적응 등이 수월할 것 같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p>
	<p>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1명임. 특수교사 1명이 정규 과정, 월수금은 자원봉사 선생님이 지원하고 있음.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음. 방과후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에 대해 특수교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한 명으로는 인력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 받음. 통합반에서 같이 방과후 수업 받으라고 함.</p>	<p>유치원생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p>
<p>이너휠체어 지원 문제</p>	<p>학교에 이너휠체어를 같이 보내야 하는 상황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음.</p>	<p>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p>

<p>휠체어 경사로와 지붕 미설치</p>	<p>본관에서 급식실로 이동하는 경사로에는 지붕이 없어서 비오는 날에는 비를 맞고 가야함. 장애인 주차장 가까운 현관은 경사로가 없어서 건물을 빙 돌아서 건물 앞쪽으로 가야 함. 지붕과 경사로 설치 요구에 예산이 없다거나 미끄러질 수 있다거나 내년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뇌병변장애, 청각장애)</p>
<p>장애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자 료 미제공</p>	<p>통합학급에서 아이에게 맞는 수업자료나 교수적 수정에 대해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했지만 “이 아이에게만 그런 거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해줄 거예요.” 란 답변을 들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뇌병변장애, 청각장애)</p>
<p>장애영아 교육적 지원 정보 접근 문제</p>	<p>영아시기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음. 교육청 설명회 때는 리플렛으로 간단하게 설명함. 용어도 너무 생소함. 특교청에 문의를 하면 “아직 모르다, 그때 어떤 아이들이 신청할지 모르다” 고만 말함.</p>	<p>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p>
	<p>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신청이나 지원을 할 수 없었음. 명칭이나 용어도 낯설고 생소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느린학습자)</p>
	<p>생후 9개월에 주변 어린이집들이 입소를 거부함. 갈 곳이 없어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특성을 이해받고 적응을 잘할 수 있었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p>
<p>수어통역사 미배치</p>	<p>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청하였음. 교육청에 문의하고 학교 입학설명회에 가서도 질의했음. 학교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전화돌리기로 떠넘김.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는 출장이나 회의중이라고 전화연결이 안됨. 학교의 답변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는데, 수어통역사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책임을 돌림.</p>	<p>초등학생 (초등학교 일반학급, 청각장애, 언어장애)</p>
<p>교사들의 낮은 장애인식</p>	<p>특수교사에게 물어보니 교사 본인도 청각장애이해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놀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일반학급, 청각장애, 언어장애)</p>
	<p>특수교사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고2면 혼자할 수 있어야 해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됨.</p>	<p>고등학생 (고등학교)</p>

	<p>학생부에서 아이가 목격자로 면담을 한 적이 있었음. 아이가 혼자 힘들어해서 나중에 알게 됨. 특수선생님에게 면담할 때 조력자로 같이 가셨냐고 물으니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함.</p>	<p>특수학급, 지적장애)</p>
	<p>담임선생님은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아이들도 힘들고 하니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함.</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뇌병변장애, 청각장애)</p>
	<p>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교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드백이 없음. 담임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면 안된다” 고 함.</p>	
<p>가족지원 문제 (자살충동)</p>	<p>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울고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이 있었음.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괴로웠음. 아이를 가장 위해주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고 싶어 했음. 다행히 긴급 24시간 돌봄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해서 한 숨 돌렸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p>
	<p>정말 심했을 때는 죽으려고 했음. 지역에 조기 교실도 1시간 거리 아침 8시 나가서 작은 아이 카시트에 둘 태워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후 5시였음. 그런 생활을 계속할 때 나아지기는커녕 언어 소실이 오고 좌절이 왔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p>
	<p>아이가 7살 때 갓난 아기 동생을 안고 다니면서 집 보다는 곳으로 언어치료를 받으러 다녔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음. 그때 너무나 지쳐 있었음. 지금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p>
<p>비수도권 거주 장애아동 지원 문제</p>	<p>집에서 장애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차로 30분 이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있음. 어린이집에서 아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아이가 울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매일 전화를 함. 집에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까지는 50분 이상을 차로 이동해야 해서 영아 순회교육을 신청할 수 없었음. 근처에는 치료실도 없고 (치료실)대기도 너무 길어서 바우처 사용도 할 수 없었음.</p>	<p>유치원생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지적장애)</p>

(3)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집에서 먼 거리 학교 배치, 중도중복장애 진단 문제, 개별화건강지원계획 문제,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설문조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문제, 개별화교육 문제, 과목별 수업 준비물 문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수업 문제, 특수교사와의 소통 문제,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 문제, 행동지원 문제, 심리안정실 지원 문제, 장애학생 특성과 수준에 맞는 평가과정 미반영, 방학때마다 바뀌는 교육환경,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교 배정 문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전의 문제, 응급상황시 책임없음에 대한 학부모 각서 요구, 형식적인 진로 특성과 계발 교육,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활동 미제공,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할 문제, 생활위원회의 적절하지 않은 징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보 문제, 이주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록 문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이며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본 면담에서 나타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중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사례는 아래 <표 I - 9>와 같다.

<표 I - 9>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사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유형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사례	기초 정보
먼 거리 학교 배치 문제	초등입학 전 12월경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가는 곳 인근 학교 특수학급을 알아보게 되었음. 교육청으로부터 인근 학교들은 이미 특수학급이 인원이 많아 입학이 어렵다고 함. “ 어머니는 차가 있으니 거리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이 어떠세요?” 라며 몇군데를 추천해줌.(자동차 운전 15분 거리임.) 부모 걸음으로 걸어서 가면 1시간 거리이고 아이와 함께 가면 1시간 30분 거리임. 가까운 곳으로는 안 되냐고 물으니 “일반아이들 들어갈 반도 없다.” 는 식으로 말함.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중도중복장애 진단 문제	교육청에 중도중복장애로 진단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해당이 없다고 함.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진단했을 때 한 명도 없다고 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학생 설문을 일반학교처럼 보냄. 그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 기능이 있는 친구들조차 참여할 수 없음.	중학생 (특수학교)

않은 설문조사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
개별화건강지 원계획 문제	뇌전증이 있어서 개별화건강지원계획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고 있음.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
개별화교육지 원팀 협의회 문제	어느날 특수교사가 문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던 게 나중에 물어보니 개별화교육협의회 동의 사인이었음. 이를 제기하자 다음번에는 도서관에 모든 학부모를 모아서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함.	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회귀난치성질환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협의회 하는 날짜를 정해서 모든 부모들이 같이 모여 진행함. 처음에는 가능한 날짜를 4일로 주고 선택하라고 해서 항의 후에 일주일 정도로 늘어남.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 아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됨. 담임, 부담임, 교과부장, 보건, 영양 교사 참석함.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개별화교육협의회 참석자가 특수교사, 늘봄 관리 교직원, 담임교사랑 엄마, 아빠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함. 교장 교감선생님도 오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어렵다고 함.	초등학생 (초등학교 일반학급, 청각장애, 언어장애)
	개별화교육협의회가 학부모들, 특수교사, 담임교사, 교장, 교감이랑 다 모여서 15분 정도 특수학급 현황이랑 학사일정 설명하고 끝남. 담임교사는 사전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특수교사에게 물으니 이렇게도 많이 한다라고 말함.	고등학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일반학교 교사들은 ‘개별화교육지원계획(IEP)’에 대해 잘 알지 못함. 학부모 상담 정도로만 인식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준비를 전혀 안해올 때가 많음. 회의를 10분만에 끝내려고도 함. 교과 선생님 참석 요청을 굉장히 과하고 무례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임.	
특수학급 1반, 2반 학부모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수학급 1반, 2반 학생의 일반학급 담임 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p>열림. 이 상황에서 특수교사와 개별적으로 들어서 이야기 하라고 함. 학부모와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과 이야기 하면 특수교사는 빠지게 됨. 특수교사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함. 그러면 특수교사는 아이에 대해 알지 못함.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회의가 아니라,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상담을 한 것임.</p>	<p>자폐성장애)</p>
	<p>학급 담임 교사와 들어서 개별화교육계획협의회 15분하고 끝남. 학교로부터 받은 개별화교육계획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표현함” 이라는 문장 한 줄뿐임. 교육적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웠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p>
	<p>개별화교육 회의때도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과 특수교사와만 이야기 나눔. 중학생이다보니 과목별로 선생님이 바뀜. 아이에 대한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과 특수학급 특수교사외에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의 이해가 부족함.</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지적 장애)</p>
<p>개별화교육 문제</p>	<p>결석과 조퇴가 잦아지면서 아이가 좋아했던 통합반 수업을 제대로 참여 못 했고 도움 반에서는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스티커 붙이기 시키고 수학 시간에 공원 산책하러 감. 수준에 안 맞는 연산풀이함.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서도 수준에 맞는 학습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음. 이유는 저희 아이만 따로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임 결국, 아이는 수준에 맞지도 않는 수업을 들어야 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수업은 가끔 하는 수업이 됐고 주로 공예나 영상수업이 다임.</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경계선 지능)</p>
<p>과목별 수업 준비물 안내 문제</p>	<p>과목별 수업 준비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음. 특수교사에게 얘기하면 알아보겠다고 하고 담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답이 없음. 아이에게 알아 갖고 오라고 하면 겨우 하나 알아 갖고 옴. 저희 아이는 말이라도 할 줄 아는데도 답답함. 말을 전혀 못 하는 아이의 부모들은 얼마나 답답할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p>
<p>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수업 문제</p>	<p>일반학급 수업을 힘들어 하고 어렵다고 함.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고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임. 국어와 수학 수업시간에는 특수학급에 있고 나머지 수업은 일반학급에서 4시간 ~ 5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음. 교실을 이동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음. 영어 수업도 특수학급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됐음. 특수학급 수업 과목은 정해져 있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p>

<p>특수교사와의 소통 문제</p>	<p>보충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아이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수교사가 보충수업 아니라고 해서 하고 함.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발견해서 알려줌. 관련해서 특수교사 선생님에게 항의 했더니, 아침에 특수학급 교실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함. 특수교사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수업 못 했다고 말함. 이에 대해 교장 선생님에게도 항의함. 학교 지킴이 선생님 덕분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교출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음.</p>	<p>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p>
<p>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이 부재</p>	<p>병설 유치원 3년 다니고 같은 학교로 갔음. 시스템이 너무 차이가 남.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아이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이 전혀 없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면 좋겠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p>
<p>행동지원 문제</p>	<p>자해, 타해도 있고 의사표현도 안됨.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행동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음. 행동문제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행동지원 되지 않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자폐성장애, 뇌전증)</p>
<p>심리안정실 지원 문제</p>	<p>중학교 올라오면서 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학교와 가정에서 큰 어려움에 처했음.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음.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쓰였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실이 뇌병변-지적장애학생에 맞게 지원될 필요가 있음.</p>	<p>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p>
<p>장애 특성과 수준에 맞는 평가과정 비고려</p>	<p>1학년 때 영어, 수학은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는데 평가는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봄. 아이가 배운 내용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2학년 때는 영어, 수학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함.</p>	<p>고등학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p>
<p>방학때마다 바뀌는 교육환경</p>	<p>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통합반으로 가야 하는데 교사도 바뀌고 자원봉사자도 바뀌게 되니까 아이가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어 함.</p>	<p>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p>
<p>중복장애아동 학교 배정</p>	<p>원하는 특수학교에 자리가 많지 않아서 뇌병변 지체 장애로 배정이 될 것 같아서 자폐성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일부러 변경했음.</p>	<p>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p>
<p>특교자 선정 이전의</p>	<p>장애 등록 전에 유치원, 초1,2학년때 어려움을 많이 겪음. 초3때 특교자 선정 이전에는 학교에서 아무런 지원</p>	<p>중학생 (중학교)</p>

어려움	을 받지 못했음.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느린학습자)
응급상황시 책임없음에 대한 학부모 각서 요구	응급상황시에 ‘학교는 책임 없음’ 에 대한 학부모 각서를 받음.	초등학생 (특수학교 초등부, 희귀난치성질환)
형식적인 진로와 특성 계발 교육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나 특성 계발에 대한 지원은 제과제빵뿐임. 아이한테 맞지 않는 형식적 교육임. 아이는 “엄마 나 이제 졸업하면 뭐 해” 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했음.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느린학습자)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	건강장애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번 의사선생님 진료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 아이는 뇌전증이라서 대발작을 할 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함. 케놀라나 위루관 삽입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장애학생 신청이 안된다고 함. 특수학교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중학생 (특수학교 중등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 미제공	체육시간에 휠체어 타고 있는 학생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활동을 하면 된다고 함. 배구를 하면 휠체어에 앉아서 공을 만진다거나 하면 된다고 함.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할 문제	피아노를 전공한 특수학급 담당 공익근무요원이 있음. 수업시간임에도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음. 피아노 연주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음.	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
생활위원회의 적절하지 않은 징계	학교에서 열린 생활위원회 가서 들어보니 “너는 안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아이에게 했다고 함.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이 올라감. 나와서 소리치르고 울고,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힘. 생활위원회 가서 아이의 장애와 행동 특성을 알려줌. 수업 방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특수학급으로 보내주시거나 집으로 보내줘도 된다고 얘기 함. 교내 봉사 2시간 받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과목 선생님도 아이의 장애도 몰라서 비장애학생처럼 대함.	중학생 (중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 자 선정에	정보가 없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늦게 받음. 40개월까지 말을 못함. 말을 못하면 기다려보라고 함. 발달	중학생 (중학교)

대한 정보 문제	<p>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함. 둘째를 키우면서 발달 상황을 거쳐서 정상발달이 되는 것을 알게 됨.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았으면. 주변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정보가 없었음.</p>	<p>특수학급, 지적장애)</p>
	<p>특수교육대상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몰랐음. 아이가 4세때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었음.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어렵다고 해서 몇 달만에 그만두고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장애전담어린이집을 가게됨. 장애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영아기 때 했을 것임.</p>	<p>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자폐성장애)</p>
이주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록 문제	<p>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발달재활바우처 등의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거기에 더해 부모조차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음. 한부모 가정이라 어머니가 일을 해야 해서 어려운 상황임. 수업 시간에 장애로 인해 다른 아이들까지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음.</p>	<p>초등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자폐성장애)</p>

3. 나가는 말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 한 건, 한 건의 크기가 다르지만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작은 문제가 결국 발달 시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침해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로 이어져 아동과 청소년 개인의 전인적 성장발달 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아기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입학해서야 알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검진 시기별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보를 받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한 달 이내에 부모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기, 초등학교령기에 과도한 치료비 지출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또는 현실적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에서 가족지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상담과 돌봄 지원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문제로 과생되는 일반학급(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급에서의 전반적인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학급에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나 중도중복장애 아동과 청소년 또는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1:1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의 현실성 문제이다. 현재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필수 구성 단계로써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협의해야 한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1명당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가 열려야 한다. 실질적인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에 대한 법 개정과 동시에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배치 기준도 학생 3명당 1명의 특수교사 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여건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의 문제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범주가 17년 전에 머물러 있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식품알레르기, 투렛장애, 학습장애 아동과 청소년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도중복장애는 법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에 들어와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 장애가 중중이어야 하는 기준으로 인해 선정률이 낮다. 이 문제는 결국 특수학급 신·증설 문제,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문제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교육권 침해로 나타난다. 특수교육대상자 범주 확대, 중도중복장애 기준 완화 등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된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 지역사회에 홀로 목소리를 내며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학교장, 교육청 담당자 등과의 갈등은 커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문제는 해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학교 안의 소수자이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교육지원

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의 구성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구성원 중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극단적인 사례로 학교 밖으로 노출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갈등 중재 제도인 법적인 사전 청문 절차(Due Process Hearing)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미국과 달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례부터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입하여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구제 절차**

2장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절차

1. 교육 관련 권리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생략)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가입일 1991. 11. 20., 적용일 1991. 12. 20.

(참고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하 장애인권리협약도 같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생략)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생략)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VIII. 교육 및 여가활동 (제28, 29조, 31조)

A. 양질의 교육

62. 장애아동은 모든 다른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지며, 협약에 규정된 대로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고 평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그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의 효과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협약 제28조 및 29조, 그리고 위원회의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논평 1호’ (2001)를 볼 것). 협약은 학교 관행을 변경할 필요성, 그리고 교사로서 하여금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

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긍정적인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규 교사를 교육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3. 장애아동은 서로 간에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 및 여타 전문가는 각각의 아동이 의사표현, 언어, 상호작용, 적응, 문제해결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잠재력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과 기량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의 기량, 능력, 자기개발을 위해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은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아동의 언어적, 감정적 의사표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B. 자부심과 자립심

64. 장애아동의 교육에는 긍정적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내용,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인간으로서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고 아동이 느끼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또한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장애아동을 학교 교실의 아동집단에 통합시키는 것은 그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학생·동년배·시민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줄 수 있다. 장애아동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또래지원(peer support)은 더 광범하게 인정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억제·성취·성공 경험을 아동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까지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C. 학교체계 내에서의 교육

65. 장애 및 이것으로 인한 특별한 필요는 유아단계에서 최초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다. 조기개입은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극히 중요하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발육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기 단계에서 발견된 아동은 유아교육, 즉 그러한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유아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국가,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유아교육은 모든 장애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위원회의 ‘유아의 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7호’ (2005)를 볼 것). 초등학교-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중등학교까지-를 포함하는 초등교육 또한 장애아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에는 의사소통의 장애물, 그리고 이동성이 제한된 아동의 접근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능력에 기초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고등교육 또한 자격을 갖춘 장애청소년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자신의 교육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위해, 많은 아동은 개인적 원조, 특히 적절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교수법을 이용하여 능력이 제각기 다른 아동을 가르치는 방법론과 테크닉을 연마한 교사, 그리고 적절하고 접근이 가능한 교재와 장비 및 보조기구-이것들은 당사국에 의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제공되어야 함-를 필요로 한다.

D. 통합교육

66. **통합교육**은 장애아동 교육의 목표이어야 한다. 일부 장애아동의 교육은 정규 학교 체계에서 쉽사리 제공될 수 없는 종류의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합의 방식과 형태는 각 아동의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에 담겨있는 통합교육이라는 목표에 대한 명시적 책무, 그리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적 교육체계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및 일반적 교육체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합 프로그램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당사국이 통합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여하튼 위원회는 일반적 교육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완전한 통합교육이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련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67. 통합교육 운동은 근년에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용어는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해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조건과 요구사항의 다양성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일련의 가치와 원칙 및 관행이다. 이 목표는 아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조직적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을 하나의 정식(正式) 교실에 배치하는 것, 또는 통합의 정도를 달리하여, 예컨대 특수교육을 받을 인원을 정해 놓고 정식 교실에 배치하는 것 등 통합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통합은 장애아동의 어려움과 필요에 관계없이 그를 단지 정규 체계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수 교육자와 정규 교육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 교과과정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개발되고 또한 재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합교육 철학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교사 및 교육체계에 관여하는 여타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68. 경력의 개발과 전환을 위한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관련된다. 경력개발은 조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능한 한 조기에, 예컨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로의식과 직업상의 기량을 개발하는 아동은 나중에 취업과 관련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동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착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발전하는 능력에 상응하여 조기에 목표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학교와 작업장 간의 체계적 조정과 감시 하에 적절한 기량 및 노동경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능적 중등학교 교과과정이 뒤따른다.
69. 경력개발은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의식과 직업상의 기량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 국한된 나라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직업훈련이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것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F. 여가 및 문화활동

70. 협약 제31조는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연령과 능력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놀이(play)는 사회적 기능을 포함해 다양한 기량을 학습하는 최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애아동의 완전한 사회통합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기회, 장소, 시간이 제공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오락과 여가활동 및 놀이를 위한 훈련은 학령에 달한 장애아동의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71. 장애아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 활동은 표현의 매개체인 동시에, 자기만족을 주는 생활의 실현, 요컨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G. 스포츠

72. 경쟁적, 비경쟁적 스포츠 활동은 가능한 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장애아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비장애 아동과 경쟁할 능력이 있는 장애아동은 그러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공평하고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배타적 게임과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배타적 행사가 열릴 경우, 대중매체는 비장애 아동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그러한 행사에 기울임으로써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²⁾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a)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c)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a)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가입일 2008. 12. 11., 적용일 2009. 1. 10.

- (b)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c)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d)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e)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b)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c)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5)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 지적(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2. 학업 중단 학생
-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

기에 있는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 법령

제22조(개별화교육)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 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

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관련 법령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침해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의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

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의 정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방임행위의 주체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판례는 아동복지법이 “유기·방임행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감독자라고만 규정하여 보호·감독의 근거를 제한하지 않아 그 범위를 확장해석하여도 무방하고, 방임행위는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만한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물리적 방임 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318 판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 23. 선고 2016고단2397 판결 참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의 정의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직접차별**)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간접차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일: 2025. 9. 19.]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권리구제 방안

1) 학교폭력³⁾

(1) 신고

- 구두 : 피해학생, 목격자,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 등에게 말하는 경우
- 경찰청 : (전화) 국번 없이 112
-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 학교전담경찰관 : 전화 또는 문자

(2) 분리 조치 등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참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보호(제2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위의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 받은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폭행 및 상해 :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 무엇으로 맞아 / 어느 정도의 피해(상처)가 발생하였음(증빙자료 필요)
- 언어폭력(모욕, 명예훼손) : 언제 / 어디서(사이버 포함) / 어떤 방법으로 / 누구에게 / 욕설(모욕, 명예훼손) 등을 / 누구에게 / 얼마나(횟수, 기간) 들었음
- 협박 및 괴롭힘 : ○○를 요구한 누구에게 / 협박(괴롭힘)을 당해 / 어떤 피해를 입

3)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년도 일부개정) 참조.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있음

- 금품갈취 :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 욕설·협박 등을 당하며 / 금액(피해물품)을 / 빼앗겼음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사이버성폭력) :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 어떤 말과 행동으로 / 수치심을 받거나 / 어떠한 행동 등을 / 누가 강제로 하였음

(4) 사안 조사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추가 학생 확인서를 접수하거나 보호자 면담, 목격학생 면담 등이 실시된다.

(5)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된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2호 처분)
-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
- 사회봉사(4호 처분)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처분)
- 출석정지(6호 처분)
- 학급교체(7호 처분)
- 전학(8호 처분)
- 퇴학처분(9호 처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학생도 자신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사례

- 뇌병변 장애학생에 대한 비하(광주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12395 판결)

피해학생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학생으로, 한 쪽 다리의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다른 쪽 다리에 비해 짧아 정상적인 보행을 하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종이 뭉치를 던졌고 피해학생이 아프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아프니까 돼지", "비계"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해학생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D은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 틱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8구합52495 판결)

가해학생은 틱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원고가 '게이필이 난다, 원 펀치하고 끝내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학생의 틱 장애 증상을 여러번 따라 하였으며, 목을 잡고 다리도 꼬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말과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2) 교육여건 등

(1) 심사청구(특수교육법 제36조)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차별 일반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진정인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나) 진정서 작성 및 접수

진정서 항목 중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기술하고, 진정인의 주장,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 회복의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작성한다.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예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지원인력, 신변처리지원 등)에 대한 차별의 경우
 - ① 몇 년도 입학, 몇 학년 재학 중
 - ② 장애 유형 및 정도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 ③ 학기 초, 중 / 몇 월에 있었던, ‘개별화교육지원 회의’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전화’ 를 통해 신변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요구한 내용 (예 : 지원인력을 요청했음, 화장실 내에 기저귀갈이대나 침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음)
- ④ 그에 대한 답변 (예 :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전화로 지원 불가하다고 함,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음)
- ⑤ 그로 인한 결과
 - 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신변처리를 하지 못함
 - 체험학습을 가지 못함
 - 학부모님이 직접 지원함
 - 별도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음
 - 방광염, 피부염 등 치료를 받고 있음 (첨부서류 : 진단서 등)

(다) 사례5)

○ 사립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거부(18진정0097200)

장애로 인한 입학 거부 또는 그에 준하는 입학 취소의 중용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차별을 벌인 피진정기관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법상 차별금지를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및 괴롭힘(17진정1017100 · 18진정0014000 (병합))

피진정인이 동일 교육자로서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나타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치가 불가피함을 판단하였다.

○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18진정0106400)

교육청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학급설치를 회피한 것은 특수학급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피해자의 전학을 거부한 것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5) 이영란·김광병,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한 학교 내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1호(2020. 5.) 31-38쪽 참조.

권고하였다.

(2)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가) 시정명령의 신청(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나) 시정명령의 내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차별행위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진정한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시정명령의 확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44조, 제50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확정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차별구제청구 소송

(가) 손해배상의 청구(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차별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제조치 청구(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4)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1)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정한 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신청 또는 요청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 또는 요청이 필수요건인지에 대한 논의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신청이나 요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나) 관련 판례

판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피고의 의무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 개인이 별도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청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차별행위가 원고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교육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은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4조 제1항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주체는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 총칙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기 위한 신청 또는 요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제4조 제1항 제3호), 교육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주체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차별 판단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 및 이에 수반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이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나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위와 같은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

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앞서 살펴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사실 그 자체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미제공 또는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신청 또는 요청 여부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보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복지 지원제도**

3장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복지 지원제도

1. 장애인 등록

사업명	내용																							
1) 장애인 등록제도	목적	장애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등록하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록 장애유형	<p>[신체적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p>[정신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신청방법	<table border="1"> <tr> <td>장애인 등록 상담</td> <td>시군구(읍면동)에 유선 및 방문 상담(구비서류 안내 등)</td> </tr> <tr> <td>▼</td> <td></td> </tr> <tr> <td>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td> <td>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유형, 원인, 진단 시기, 의사 소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td> </tr> <tr> <td>▼</td> <td></td> </tr> <tr> <td>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td> <td>시군구(읍면동)</td> </tr> <tr> <td>▼</td> <td></td> </tr> <tr> <td>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td> <td>시군구(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td> </tr> <tr> <td>▼</td> <td></td> </tr> <tr> <td>장애정도 정밀심사</td> <td>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후 시군구(읍면동)에 결과 통보</td> </tr> <tr> <td>▼</td> <td></td> </tr> <tr> <td>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td> <td>시군구(읍면동)</td> </tr> </table>	장애인 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에 유선 및 방문 상담(구비서류 안내 등)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유형, 원인, 진단 시기, 의사 소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	시군구(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		장애정도 정밀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후 시군구(읍면동)에 결과 통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에 유선 및 방문 상담(구비서류 안내 등)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유형, 원인, 진단 시기, 의사 소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	시군구(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																								
장애정도 정밀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후 시군구(읍면동)에 결과 통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록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외국국적 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및 F-2 중 난민인정자('18.3.20 시행),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확인 후 장애인등록 가능한 경우 국내인과 동일한 절차·방법으로 수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2. 소득보장

사업명	내용																																		
1)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p>[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여명</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 소득</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r> <tr> <td>생계급여 (30%)</td> <td>765,444</td> <td>1,258,451</td> <td>1,608,113</td> <td>1,951,287</td> </tr> <tr> <td>의료급여 (40%)</td> <td>956,805</td> <td>1,573,063</td> <td>2,010,141</td> <td>2,439,109</td> </tr> <tr> <td>주거급여 (47%)</td> <td>1,148,166</td> <td>1,887,676</td> <td>2,412,169</td> <td>3,411,932</td> </tr> <tr> <td>교육급여 (50%)</td> <td>1,196,007</td> <td>1,966,329</td> <td>2,512,676</td> <td>3,554,096</td> </tr> </tbody> </table>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생계급여 (30%)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주거급여 (47%)	1,148,166	1,887,676	2,412,169	3,411,932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6	3,554,096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생계급여 (30%)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주거급여 (47%)		1,148,166	1,887,676	2,412,169	3,411,932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6	3,554,096																															
기준중위 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생계급여 (30%)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주거급여 (47%)	1,148,166	1,887,676	2,412,169	3,411,932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6	3,554,096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부모급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급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당 또는 바우처 지급 <p>[현금]</p>																																	

사업명	내용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바우처] - 차액 발생 시 현금지급	<table border="1" data-bbox="520 521 1347 826">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보육료 바우처</th> <th colspan="2">익월지급</th> </tr> <tr> <th>부모급여(차액)</th> <th>정산금</th> </tr> </thead> <tbody> <tr> <td>0세(0세반)</td> <td>54만원</td> <td>46만원</td> <td rowspan="3">입퇴소일 또는 상하 위반 편성에 따라 매월 금액 상이</td> </tr> <tr> <td>1세(0세반)</td> <td>54만원</td> <td>-</td> </tr> <tr> <td>1세(1세반)</td> <td>47.5만원</td> <td>2.5만원</td> </tr> <tr> <td>주무 부처</td> <td>교육부</td> <td colspan="2">보건복지부</td> </tr> </tbody> </table>		구분	보육료 바우처	익월지급		부모급여(차액)	정산금	0세(0세반)	54만원	46만원	입퇴소일 또는 상하 위반 편성에 따라 매월 금액 상이	1세(0세반)	54만원	-	1세(1세반)	47.5만원	2.5만원	주무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구분	보육료 바우처	익월지급																						
		부모급여(차액)	정산금																					
0세(0세반)	54만원	46만원	입퇴소일 또는 상하 위반 편성에 따라 매월 금액 상이																					
1세(0세반)	54만원	-																						
1세(1세반)	47.5만원	2.5만원																						
주무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 차액 발생 시 현금지급	<table border="1" data-bbox="520 958 1334 1236">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부모급여(현금)</th> <th colspan="2">익월지급</th> </tr> <tr> <th colspan="2">부모급여(바우처)</th> </tr> <tr> <th>부모보육료</th> <th>종일제 아이돌봄</th> </tr> </thead> <tbody> <tr> <td>0세(0세반)</td> <td>100만원</td> <td>54만원</td> <td rowspan="2">시간당 12,180원 (최대 200시간 지원)</td> </tr> <tr> <td>1세(0세-1세반)</td> <td>50만원</td> <td>54만원 47.5만원</td> </tr> <tr> <td>주무 부처</td> <td>보건복지부</td> <td>교육부</td> <td>여성가족부</td> </tr> </tbody> </table>		구분	부모급여(현금)	익월지급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2,180원 (최대 200시간 지원)	1세(0세-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구분	부모급여(현금)	익월지급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2,180원 (최대 200시간 지원)																					
1세(0세-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아동수당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급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지급(아동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4) 양육수당	목적	가정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사업명	내용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p>[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p>[장애아동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5)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포함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중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 3~6급)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6) 아동발달 지원계획 (디딤씨앗 통장)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신규 선정하여 지원(서울시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대상 중복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사업명	내용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3. 보육 및 교육

사업명	내용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지원시설 : 587,000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수납한도액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8,000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2)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에 신청
3) 시간제 보육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바우처)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

사업명	내용	
		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반(6개월~36개월 미만): 9시~18시 운영 • 통합반(6개월 이상 0~2세): 9시~16시 운영 •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4) 특수교육 지원센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지원함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5년 8월 기준 전국에 197개소가 설립·운영 중임 •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https://www.nise.go.kr/onmam) 내 ‘기관정보’ → ‘교육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음
5)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확정
6) 국립 특수학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사업명	내용	
및 국립부설 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특수교육원(www.nise.go.kr) 사이트 신청
8) 취업준비 및 진로설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 문의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창업점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 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 평가액이 부동산 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문의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창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2개소 • 문의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중증 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문의 : 인사혁신처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지원내용 :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table border="1" data-bbox="528 1137 1342 1565"> <thead> <tr> <th data-bbox="528 1137 807 1227">1단계</th> <th data-bbox="807 1137 1070 1227">2단계</th> <th data-bbox="1070 1137 1342 1227">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8 1227 807 1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용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수립 </td> <td data-bbox="807 1227 1070 1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 직업 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td> <td data-bbox="1070 1227 1342 1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적합 일자리(동행 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용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 직업 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적합 일자리(동행 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용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 직업 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적합 일자리(동행 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국가 공무원 및 의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애인 응시자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 주무부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신청 								

사업명	내용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 수 적용 대체 • 주무부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문의
9)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 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교육지원 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 교육지원 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 지원 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 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4. 의료 및 재활

사업명	내용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2) 장애인 등록 진단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사업명	내용	
발급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3)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4)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장애등록되지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4)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청능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5)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품목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지체·뇌병변장애인청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앞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 인용 카시트), 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

사업명	내용	
		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탁자·책상 및 기립형 책상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인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별표2] 참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8)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 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9) 지역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

사업명	내용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대상 교육, 장애인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지역 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https://www.nrc.go.kr/chmcpd/main.do) 내 ‘주요사업 안내’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10)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뇌병변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 구비 •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사전예약 필요) 지원 - 필담(문자)이 가능한 진료시간 확보 •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인력이 이동과 의사소통 지원 • 발달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보호자)과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無理하게 강요하지 않음 - 의사와 간호사들이 쉽게 말하고 기다려줌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https://www.nrc.go.kr/chmcpd/main.do) 내 ‘주요사업 안내’ →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 ‘수검자(장애인)용 메뉴’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가능
11) 장애인 건강 (치과) 주치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관리 건강주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중증 및 경증)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 조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돌봄 등을 제공함 •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 반건강관리와 주장애편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함 • 치과주치의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내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순 서대로 클릭하면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음
12)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 행동발달증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계획 등 의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 행동문제 중재 등 관련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복지시설 등 종사자 에 대한 교육 -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13)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진 9세~18세 청소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교육, 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오름과정(1개월 프로그램) • 디딤과정(4개월 프로그램) • 힐링캠프(11박 12일 프로그램) ※ 본인 부담금 발생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www.nyhc.or.kr]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www.youthfly.or.kr]

출처 : 보건복지부(2025). 장애인복지사업안내2. 세종: 보건복지부

청소년1388 홈페이지(<https://www.1388.go.kr>)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

5. 돌봄

사업명	내용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월 1,000천원~7,980천원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 월 1,332천원 - 자립준비 : 월 335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월 335천원 ※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중('21년~)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40% (서비스 단가:12,180원/시간)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3)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영아 [시간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p>[기관연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p>[대기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부모 가정(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이외 장애(3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자녀(3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종일제(12,180원), 시간제(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질병감염아동(14,610원), 기관연계 (18,600원) • 정부지원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_장기요양보험료 제외)에 따른 가구 유형별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마형(200% 초과) - 나형 40%(6~12세), 다형 30%(0~5세), 20%(6~12세), 라형 15%(0~5세), 10%(6~12세) •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p>[가-라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지원신청(이용자) → 지원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 → 바우처 카드 생성(카드사) → 바우처 카드 수령 및 결제(이용자)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p>[마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월 66시간(2023년 기준)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예시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사업명	내용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5) 식품 알레르기 아동에 대한 지원정보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 의사환자 및 질환자 중 다음 해당자 (알레르기질환 :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알레르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최대20만원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본인부담금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가 병원에서 검사/치료 후 사후 신청 거주지역 보건소(방문진 구비서류 확인)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아토피·알레르기 천식센터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알레르기 관련 정보 이용 가능

출처 : 여성가족(2025).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6. 가족 및 부모지원

사업명	내용	
1)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2)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포 온라인 신청
3) 발달장애 인 긴급 돌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보호자 •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장애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 1회 최대 7일(사유별 이용일수 차이), 1년 최대 30일 - 이용료 15천원, 식비 15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지불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평일 주간) 또는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및 공휴일)
4) 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및 역량강화 지원 정보	육아종합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 내 ‘센터소개’ → ‘전국센터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지만, 장애아가족 교육프로그램(장애아부모·비장애형제자매 교육 등)을 제공하기도 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시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부모연대, 부모회 등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 지역별 수행기간이 상이함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가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의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조모임 및 부모교육을 이용할 수 있음 • 지역 가족센터에 대한 정보는 ‘가족센터’ (https://www.familynet.or.kr) 내 → ‘지역센터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7. 기타 복지 서비스

사업명	내용	
1) 복지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비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도 운영 중임 • 서울시의 경우 출산한 부모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엄마아빠 택시’를 운영하기도 함
3) 권리보장	장애우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문의 : 거주지역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와 사업,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현장 출동 동행 지원, 아동학대예방·피해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문의 : 거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4) 장애인 이용시설	수어통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출장수어통역-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비장애인에 대한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문의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2)

사업명	내용	
점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 지원내용 :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지원내용 [장애인과 가족지원] - 장애가정 청소년 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인권교육 및 인권 상담 실시 -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 문의 :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3556)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4

**미국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

4장 미국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

1. 미국의 특수교육 관련법

1975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이하 IDEA)에서는 특수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상적절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장애 학생은 비용 부담 없이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주(州)와 지방 교육청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 체계 안에서 제공함. 교육은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기능적·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충족하는 교육 계획으로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작성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서비스 내용, 평가 방법을 포함한 문서임.
- 공정한 진단, 분류, 배치
모든 아동은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별 없이 평가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가능한 한 일반 학급에 배치, 필요할 때만 특수학급·별도 학교 이용하도록 하여 통합교육이 우선임을 보여줌.
- 정당 절차에 대한 권리
학부모는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평가 과정과 IEP 팀 참여, 교육 배치 결정 논의에 참여하고 분쟁 해결 절차(조정·중재·적법절차 심리 등)를 이용 할 수 있음을 알림. 학부모 동의 없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고지함.

2. 정당 절차에 대한 권리

“절차적 보호 통지”(Procedural Safeguards Notice)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하에서, 장애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의 특수교육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와 절차를 알리는 문서이다. 미국의 모든 주(및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IDEA 적용을 받는 기타 미국 자치령)는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고지서(Procedural Safeguards Notice)를 제공해야 한다.

- 연방 요구사항: 34 C.F.R. § 300.504는 학군(school district)이 부모에게 IDEA에 따른 권리(절차적 보호)를 서면으로 고지를 하도록 요구한다.
- 주(州)의 역할: 각 주 교육청은 연방 IDEA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양식의 고지서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주 차원의 권리나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다.
- 배포 시점: 고지서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 최소한 매년 1회

- ✓ 부모가 최초 평가(initial evaluation)를 요청하거나, 적법절차 청구(due process complaint)를 제기할 때
- ✓ 학년도 중 부모가 첫 번째 주(州) 불만(state complaint)을 제기할 때
- ✓ 부모가 요청할 때마다

모든 미국의 주(州)절차적 보호 통지에는 평가,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실행 절차, 분쟁해결, 정보 접근, 장애 아동 징계 절차, 이의 제기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고지서의 핵심 내용은 IDEA에 기반해 전국적으로 대체로 동일하지만, 각 주는 공식적인 자체 절차적 보호 고지서를 발행하며, 형식·언어·주 차원의 추가 보호 조항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의 절차적 보호를 검토하고자 한다.

3. 뉴욕주에서의 절차적 보호 통지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절차적 보호통지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Part B)⁶⁾’에 대한 요약과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정보>

- 사전 서면 통지(권고 사항 통지)
 - ✓ 교육구는 교육적 배정의 시작과 변경, 무상적절공교육(FAPE)를 제안하거나 거부할 시 그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에 참고한 평가 절차, 평가, 기록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함
 - ✓ 장애인교육법(IDEA)에서의 파트 B(3-21세의 아동 대상)의 학교 기반 특수교육 서비스에서의 절차적 보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함.
 - ✓ 부모는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관,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함.
 - ✓ 부모가 동의를 한 후 그 결정에 대한 철회를 한 경우 자녀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함.
 - ✓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문서화하여 보유해야 함.

전화 통화 내역이나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 기록, 부모에게 보낸 서신 사본 또는 부모가 보낸 회신,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과 해당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등이 그 예이다.

- ✓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에 근거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교육구에서 자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부모가 이에 답하지 않으면 교육구에서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합의 회의 및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해 자녀 대상 재평가 동의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하여 이러한 재평

6) 뉴욕주 교육부,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P-12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part B.**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programs/special-education/procedural-safeguards-notice-korean.pdf>

가를 추진하고자 할 수 있음(이는 의무사항은 아님). 최초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교육구에서 이러한 방식은 IDEA의 파트 B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

• 독립적 교육평가

학부모는 교육구에서 제공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독립적 교육 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s, IEE)를 받을 권리가 있음. 교육구에서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출하여 심리를 요청하였거나 IEE가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지출을 통해 IEE를 제공해야 함.

<정보 비밀 보장>

- ✓ ‘교육 기록’의 정의와 ‘참여 기관’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
- ✓ 개인 식별 정보의 정의 포함
- ✓ 부모에 대한 통지
 - 교육부와 교육구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
- ✓ 교육 기록과 해석에 대한 합리적 정보 요청 및 기록 사본 요청, 대리인이 검토하게 할 권리 등을 명시
- ✓ 개인 정보를 열람 시 열람한 당사자 정보와 날짜 기록하기
- ✓ 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상의 정보가 부정확 할 시 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음. 참여 기관의 정보 수정 요청 거부 시 심리 기회 절차 고지 해야 함.
- ✓ 개인 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정보 보호 그리고 정보 파기에 대한 안내

<분쟁 합의 방안>

-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적 배정 또는 FAPE 제공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구 간에 발생하는 우려 또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함. **중재, 주 민원, 적법 절차 심리(공정심리)**의 방법으로 교육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덜 적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함.

• 중재

교육구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이전에 발생하는 사안 등 IDEA 파트 B의 모든 사안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

- ✓ 학부모와 교육구의 자발적 참여
- ✓ 중재 과정은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에 명시된 학부모의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
- ✓ 중재는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고 자격 요건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진행해야 함.

• 주 민원 절차

IDEA 파트 B 규정은 주 민원과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심리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제시함. 개인 혹은 조직은 교육구,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파트 B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주 민원을 제출할 수 있음. 주 민원을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공정 적법 절차 심의관은 (합의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심리하고, (본 문서의 합의 과정 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합의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함.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및 심리를 처리하는 동안 자녀의 학교 배정 (미결)
 <장애아동 징계절차 절에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공정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와 교육구 또는 학부모와 주 정부 조사관(State Review Officer, SRO) 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현재 배정된 학교에 남아있어야 함.

• 합의 과정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교육구에서는 학부모와 민원에 명시된 사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뉴욕주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 관련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함.

- ✓ 회의의 목적: 학부모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민원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논의하여 교육구에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에 연루된 부모 또는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합의 과정절에 기술된 공정 적법 절차 심리의 기회를 가져야 함. 교육구는 로테이션 목록에서 공정 심의관을 임명하고 공정 심의관이 공정 심리를 소집함.

- 공정 심의관(Impartial hearing officer, IHO)은 주교육기관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개입하는 학교 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심리에서 심의관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IDEA의 조항, IDEA 관련 연방/뉴욕주 규정, 연방/주 법원의 IDEA에 대한 법적 해석에 정통하고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심리를 진행하며 적합한 표준 법률 관행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심리권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 당사자나 **판결 이의 제기의 공정 재심** 절에 기술된 이의 제기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짐.

- ✓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증거 제출, 증인 대질 및 반대 심문,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함.
- ✓ 심리 5영업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제출할 수 없음.
- ✓ 심리 기록, 조사 결과, 판결문을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받을 권리가 있음.

심리 중 학부모의 권리

- ✓ 학부모는 자녀의 참석, 심리 공개, 무료 기록 제공,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일반 대중에 심리를 공개할 권리
- ✓ 심리 기록, 진상조사 결과, 판결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
- ✓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심의관의 판결

아동이 FAPE 를 받았는지에 관한 공정 심의관의 판결은 실질적 사실에 기반해야 함.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정 심의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이 FAPE 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음.

- ✓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아동이 FAPE 를 받을 권리를 방해받은 경우
- ✓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의 FAPE 제공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받은 경우, 또는
- ✓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교육적 혜택을 박탈당한 경우
- ✓ * 해석 시 유의사항: IDEA 파트 B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절차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

• 신속 재심 구제 명령

일반: 196일 이상 IHO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구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IHO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속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속 구제를 요청한 최초 시점부터 공정 심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은 최대 21영업일 이내이어야 한다.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은 (a) 학부모가 제안한 구제 명령, (b) 학부모가 제안하고 공정 심의관이 기록에 따라 수정한 구제 명령 또는 (c) 기록에 따라 구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 중 하나이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 중 일방이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정 심의관이 학부모가 제안한 구제를 명령했고 이러한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 정부 조사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조사관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 최종 심리 판결

적법 절차 심리(징계절차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학부모나 교육구가 주 정부 조사관(State Review Officer, SRO)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공정심의관(IHO)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SRO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요청의사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Seek Review)(양식A)는 IHO 결정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교육구에 제출해야 한다. 재심요청통지서(양식 B)와 재심 신청서는 40일 이내에 교육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 SRO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SRO는 접수된 이의 제기를 심리하여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다만,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 최종 결정은 학부모, 변호사, 교육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송부된다.
- ✓ SRO 규칙은 <http://www.sro.nyse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SRO는 공정한 재심을 수행해야 한다.
- ✓ SRO는 전체 심리 기록을 검토한다.
- ✓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 ✓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심리를 열 수 있으며, 이때 심리권이 적용된다.
- ✓ SRO는 독립적인 판결을 내려 학부모와 교육구에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결과를 제공

한다.

✓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아래 기술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RO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 심리 및 재심의 기한 및 편의

교육구에서는 30일의 합의 회의기간이 종료된후 취학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또는 30일의 합의 기간 변경 절차에 기술된 변경 기간이 종료된 후 취학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 심리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 또한

✓ 학부모와 교육구에 판결문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SRO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SRO가 연장한 기간 내에 재심의 최종 판결을 내려서 학부모와 교육구에 판결문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일정 기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IHO 또는 SRO는 상기 기술한 기한(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의 심리 판결 기한과 30일의 SRO 판결 기한)에 따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구두 변론을 포함하는 각 심리 및 재심은 학부모와 자녀의 편의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장소와 시간에 열려야 한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민사소송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SRO(주정부 재심 담당관)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주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RO 판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 법원은 행정 재판 기록 검토, 요청 시 추가 증거 청취, 증거 우위 원칙에 따른 판결 및 적절한 구제 조치 부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연방 지방 법원은 분쟁 규모와 관계없이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판결할 권한을 갖는다.

▪ 해석 원칙

IDEA는 다른 법률(헌법, ADA, 재활법 504조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구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 직행 전에 IDEA의 행정 절차(민원, 합의 회의, 적법 절차 심리 등)를 먼저 거쳐야 한다.

✓ 변호사 선임료

학부모가 IDEA 파트 B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 변호사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 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 부담이 학부모 측에 부과될 수 있다.

교육구 또는 주교육기관이 승소한 경우, 학부모 또는 그 변호사가 일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의 요청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비용 증가 목적 등 부적절한 의도로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 비용 제공

✓ 법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역사회 통상 요율에 따라 정하며, 보너스나 승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합의 제안 이후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외

사항으로는 학부모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더라도 승소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용 제공이 가능하다.

- ✓ CSE 또는 CPSE 회의 비용은 소송 결과로 소집된 경우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합의 회의 역시 행정·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다.
- ✓ 법원은 학부모나 변호사가 분쟁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 ✓ 승인된 선임료가 지역 변호사 평균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삭감된다.
- ✓ 사건 성격에 비해 과도한 시간·서비스가 투자된 경우에도 삭감된다.
- ✓ 학부모 측이 적법 절차 민원 통지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용 삭감된다. 단, 교육구나 주가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IDEA 절차적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비용은 삭감되지 않는다.

<장애 아동 징계 절차>

- 교직원의 권한

사례별 판결

장애 학생 징계 절차는 Education Law §3214와 Commissioner's Regulations Part 201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학생을 정학·퇴교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 5일 이하 정학 시 학부모는 즉시 전화 통보와 24시간 이내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사건 개요, 제안된 정학,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학부모는 자녀가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학 전 교장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 5일 초과 정학 시 학부모는 심리 기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변호인 조언, 증인 심문 및 출두 요청 권리가 포함된다.
 - 의무취학 연령 아동은 정학·퇴교 기간 첫 10일 동안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대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 ✓ 비장애 아도에 취하는 조치와 같은 정도로, 학생 규범 위반 시 최대 10일 동안 퇴교 조치가 가능하다. 이때 교직원은 임시 대안 교육 환경(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 또는 다른 환경으로 배정할 수 있다.
 - ✓ 한 학년도에 서로 다른 위반으로 10일 이하 정학을 반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반복 정학은 학교 배정의 변경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 ✓ 동일 학년도에 누적 10일 이상 퇴교되는 경우, 교육구는 추가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 ✓ 서비스 제공 범위는 *서비스 절*(Service provision section)에 따라 결정된다.
- 추가 권한

퇴교당한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IAES(임시 대안 교육 환경) 에서 제공될 수 있다.

 - ✓ 한 학년도에 10일 이하 퇴교 시, 교육구가 비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

아동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 ✓ 의무 취학 연령 학생은 10일 미만 정학 시 반드시 대체 수업을 받아야 한다.
- ✓ 비의무 취학 연령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 학생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한다.
- ✓ 정학 첫 10일 동안은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 동일한 서비스 요건이 적용된다.
- ✓ 뉴욕주 규정: 초등학생은 하루 2시간 이상(주 10시간), 중고등학생은 하루 3시간 이상(주 15시간) 대체 수업 제공.
- ✓ 10일 이상 퇴교 시, 아동은 일반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환경에서도 IEP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FBA(기능적 행동 평가) 및 BIP(행동 개입 계획) 지원·조정도 제공되어야 한다.
- ✓ 누적 10일 이상 퇴교되었더라도 단일 퇴교가 10일 이하이면서 학교 배정 변경이 아닌 경우, 교직원과 교사 협의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
- ✓ 퇴교가 학교 배정의 변경인 경우, 서비스 수준은 CSE/CPSE가 결정한다.

■ 징후 판정

학생 행동 규범 위반으로 학교 배정 변경을 결정한 경우(10일 이하 퇴교 및 학교 배정 변경이 아닌 퇴교는 제외) 교육구·학부모·CSE/CPSE 위원이 10일 이내에 IEP, 교사 관찰 사항, 학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등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한다.

- ✓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는지또는 직접적·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 ✓ 문제 행동이 IEP 미이행의 직접적 결과인지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 징후(Manifestation)로 판정한다. 행동이 IEP 미이행의 결과로 판정되면, 교육구는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였는지에 대한 결정

- ✓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로 판정되면 CSE/CPSE는 FBA를 실시하고 행동 개입 계획 (Behavioral Intervention Plan, BIP)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BIP를 재검토·수정해야 한다.

특별 상황을 제외하고, 아동은 원래 학교 배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단, 학부모와 교육구가 합의하면 행동 조정 계획의 일부로 학교 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특별 상황

문제 행동과 관계없이, 교직원은 특정 심각한 경우 아동을 최대 45일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로 배정할 수 있다.

- ✓ 아동이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 아동이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불법 약물 소지·사용 또는 규제 약물 판매·권유를 하는 경우.
- ✓ 아동이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연속 수업일 10일 이상 퇴교시, 학교 배정 변경으로 간주된다. 한 학년도 총 퇴교일 10일 초과, 문제 행동의 반복성·유사성, 퇴교 기간·반복 등도 학교 배정 변경 판단 요인이다. 학교 배정 변경 여부는 교육구가 사례별로 결정하며, 이의 제기는 적법 절차와 사법 재판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

■ 이의 제기

- ✓ 학부모는 학교 배정 결정이나 장애로 인한 징후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 심리 요청**이 가능하다.
 - ✓ 교육구도 아동이 현행 학교 배정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아동에게 상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 ✓ 공정 심의관은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하며, 필요시 아동을 **원래 학교로 복귀** 시키거나 **최대 45일 IAES로 배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아동이 원래 학교로 돌아와도 상해 가능성이 있으면 **심리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 ✓ 민원 접수 시, **민원 절차·심리·판결 이의 제기·공정 재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 신속 심리나 합의 회의 예외가 있다.
 - ▶ 신속 심리: 심리 요청 후 **20일 내 심리, 10일 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 합의 회의: 민원 통지 후 7일 내 회의, 15일 내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 진행 가능.
 - ▶ 신속 적법 절차 심리 판결도 **기존 심리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 * 이의 제기 기간의 학교 배정은 아동은 IHO의 판결이 날 때까지 또는 교직원의 권한 절차에 규정된 퇴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IAES에 남아있어야 한다(학부모와 NYSED/ 교육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의 보호

아동이 특수교육 자격이 없더라도, **교육구가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모든 보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구가 아동의 장애 사실을 인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학부모가 서면으로 특수교육 필요성을 알린 경우
- ▶ 학부모가 IDEA 파트 B 평가를 요청한 경우
- ▶ 교사 또는 교육구 직원이 아동 행동에 대한 구체적 우려를 특수교육 책임자나 감독관에게 전달한 경우

■ 교육구가 아동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간주되는 경우:

- ✓ 학부모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 ✓ 평가 결과 아동이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 ✓ 근거가 없는 경우, 아동은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 ✓ 징계 과정 중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신속하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정확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퇴학 등 학교 당국에서 결정한 교육적 배정**의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
- ✓ 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 정보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는 경우, 교육구에서는 상기 기술한 징계 요건 등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혜택/보험 이용>

- 공공 보험 적용 장애 아동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위해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보험/혜택 (Medicai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공공 보험 접근 전,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최초 접근 전과 이후 매년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 통지에는 학부모가 FAPE 제공을 위해 가입할 의무가 없고,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이 없음을 안내해야 한다.
- ✓ 보험 이용이 **보장 범위 축소, 가족 부담 증가, 보험료 인상, 면제 자격 상실**등 불이익을 초래하면 이용할 수 없다.
- ✓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해도, 교육구는 모든 **IE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민간 보험 적용 장애 아동

학부모가 부모 동의 -정의 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 해 교육구는 민간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다.

- ✓ 교육구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학부모가 민간보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교육구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함.

* 교육구는 학부모가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해야 할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IDEA 파트 B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 ✓ 교육구가 장애 아동에게 FAPE를 제공했음에도,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에 등록하면 교육구는 일반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립학교 소재 교육구는 해당 아동을 필요를 충족하는 학생 그룹에 포함해야 한다.
- ✓ 학부모가 교육구 동의 없이 사립학교에 등록했다라도, 법원 또는 IHO가 FAPE 미제공과 사립학교 진학 적절성을 인정하면 교육구에 비용 상환을 명할 수 있다.
- ✓ 사립학교 상환 비용은 학부모가 CSE/CPSE 회의에서 **공립학교 거부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평가 계획 통지를 받고도 아동 평가를 거부**한 경우, 또는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액 또는 거부될 수 있다**.
- ✓ 학교가 통지를 방해하거나, 학부모가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준수 시 아동 신체적 상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환 비용 감액 및 거부가 불가하다.
- ✓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준수 시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비용 감액 및 거부는 불가하다.

4. 미국 특수교육 관련 판례

미국 특수교육은 판례를 통해 장애인교육법이 보완되고 명확해지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음은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IDEA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결과물이다.⁷⁾

1) 무상교육(FAPE)의 기준

Rowley v. Board of Education (1982)

1982년 미 연방대법원은 FAPE(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무상교육)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기본적인 기회의 장(basic floor of opportunity)”을 제공해야 하지만,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최소한의 교육적 혜택(educational benefit)을 보장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7년의 Endrew F. 의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례에서는 FAPE의 기준을 단순한 “더 이상 퇴행하지 않는 최소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도전적이고 진전된 교육적 진보(substantive educational progress)”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최소제한환경 의무 충족

- Daniel R.R. v. State Board of Education, 874 F.2d 1036 (5th Cir. 1989):

이 사건에서 제5순회항소법원은 학군이 아동을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서 교육하려는 의무를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단계 접근법(two-pronged approach)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은 “보조적 지원과 서비스(supplemental aids and services)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일반 학급 내 교육이 해당 아동에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교가 아동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학급에 통합(mainstream)시켰는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법원은 1단계 판단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비한정적(non-exhaustive) 요소 목록을 제시하였다.

- ✓ 주(州)가 장애아동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 아동이 일반 교육을 통해 교육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 ✓ 아동의 전체적인 교육 경험을 고려하여,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각각이 주는 이익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 ✓ 장애아동의 존재가 일반 학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2) 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1984년 Irving Independent School District 대 Tatro 의 사례

Tatro의 사례에서는 이분척주를 가진 아동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처음으로 “학교 보건 서비스(school health services)”와 “의료 서비스(medical services)”의 구분을 시도한 판례이다. 관련 서비스(related services)에는 의사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보건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학교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7) Law Office of Anne I. Treimanis, LLC
<https://spedlawyers.com/important-special-education-cases/>

보았다. 반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학교가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1999년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rict 대 Garret F.의 사례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FAPE 제공 실패에 대한 사립학교 학비 비용 상환 요구

- Burlington School Committee v. Massachusetts Board of Education, 471 U.S. 359 (1985)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사립학교 학비에 대한 비용 상환(reimbursement) 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학군이 FAPE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고, 부모에게 사립학교 학비를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과거에 제공되지 못한 교육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보상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보상적 교육이 IDEA(장애인교육법) 하에서 FAPE의 부재를 시정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며, 장애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가 IEP(개별화교육계획)에서 권장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자녀를 일방적으로 전학시킨 경우에도, 해당 배치를 적절한 교육적 대안으로 판단하면 학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단, 부모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 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상환받을 수 없다.

- Florence County School District Four v. Shannon Carter, 510 U.S. 7 (1993) 사건
학습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공립 학군에서 제공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켰다. 그 후 부모는 학군이 자녀에게 FAPE(무상교육)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 학비에 대한 학군의 상환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군이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비를 학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교육법 (IDEA)에 따라, 학군이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적합한 사립학교 배치를 선택하고 그 학비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Forest Grove School District v. T. A., 557 U.S. 230 (2009):

T.A.는 오리건주 Forest Grove 학군(공립학교 구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중반기까지 공립학교에 다녔다. 중·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 부진, 집중력 결핍 등의 어려움을 보였지만, 학교 측은 장애 학생으로 선별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경 T.A.의 부모는 민간 전문가 진단을 통해 ADHD 및 학습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T.A.를 공립학교 대신 사립 특수학교로 전학시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인교육법 (IDEA)”이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기존에 받은 적이 없더라도, 사립학교 학비에 대한 보상(재정 환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립학교 배치를 먼저 시도하지 않아도 사립학교 교육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장애인 교육법(IDEA)의 범위 명확화

- Fry v. Napoleon Community Schools, 580 U.S. (2017) 사례

뇌성마비를 가진 어린 소녀 E.F.는 일상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보조견 Wonder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속 학교(Napoleon Community Schools)는 그녀의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상 이미 인적 보조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보조견의 동반을 거부하였다. 이에 부모는 ‘장애인차별법(ADA)’과 ‘재활법 504조(Section 504)’ 위반으로 차별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이 FAPE(무상 적절한 공교육)의 부재 문제라면 IDEA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차별·접근권 보장 문제라면 곧바로 ADA나 다른 법률에 따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병행적 법적 경로를 허용하였다.

- Perez v. Sturgis 공립학교 (2023) 사례

청각장애 학생이 수년간 적절한 교육(FAPE)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학교가 잘못을 인정했으나, 부모가 장애인법(ADA)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은 IDEA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구제이므로, IDEA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Fry 판례를 확장하여, IDEA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제를 원할 때는 IDEA절 차를 건너뛸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5) IEP 개발과정의 부모 참여와 IEP의 최소기준

T.P. & S.P. ex rel. S.P. v. Mamaroneck Union Free School District, 554 F.3d 247 (제2연방항소법원, 2009):

IDEA 사건에서의 절차적 심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절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의회가 IEP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기대한 바의 상당 부분, 혹은 그 전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Mamaroneck 교육구가 IDEA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때, 핵심은 부모가 IEP 개발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이다. IDEA 규정은 교육구가 부모의 참여 없이도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부모 제안에 대한 제안이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활동(preparatory activities)”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이 퇴보하지 않고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IEP를 제공하고, 사소한 진보에 그치지 않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 IDEA상의 실질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구는 각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는 없다.

- M.H. 대 뉴욕주 교육부, 712 F. Supp. 2d 125 (S.D.N.Y. 2010)

법원은 FBA(기능적 행동 평가)의 부재가 FAPE(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IEP가 아동이 보인 구체적인 문제 행동들을 명시하고, 그 행동들이 학습을 방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IEP가 대부분의 목표에 대해 평가 절차(evaluative procedures)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DEA 위반을 인정하였다.

- Sumter County School District v. Hefferman (2011)

법원은 학군이 학생의 IEP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FAPE(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부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IEP는 주당 15시간의 ABA 치료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학교는 그 중 7.5시간만을 제공하였다.

6) 학부모의 협력 거부로 인한 일방적 배치 요구의 불이익

- C.G. 대 파이프 타운 커뮤니티 교육구, 513 F.3d 279 (제1순회항소법원, 2008)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학부모의 사적 학비 상환 청구를 기각한 청문 담당관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 배치를 제외한 어떠한 배치도 고려하기를 일관되게 거부함으로써 IEP 과정이 방해받았고, 그로 인해 IEP의 최종 확정이 지연되어 최종 IEP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M.H.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712 F. Supp. 2d 125 (S.D.N.Y. 2010)

법원은 FBA(기능적 행동 평가)의 부재가 FAPE(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IEP가 아동이 보인 구체적인 문제 행동들을 명시하고, 그 행동들이 학습을 방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IEP가 대부분의 목표에 대해 평가 절차(evaluative procedures)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DEA 위반을 인정하였다.

7) 따돌림 문제에 관한 학교 측의 적절한 대응

- T.K. 대 뉴욕주 교육부, 779 F. Supp. 2d 289, 270 Ed. Law Rep. 593 (E.D.N.Y. 2011)

학교가 따돌림(bullying)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경우 FAPE(적절한 무상 공교육)는 부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 L.K.와 그 부모를 대리한 변호사 Gary Mayerson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2순회항소법원이 Weinstein 판사의 판결을 용기 있게 확정한 것은 모든 학생이 신체적·심리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따돌림에 관한 우려를 전달할 때 그 우려가 시의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조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8) 장애 아동의 처우에 관한 사례

- HH 대 Moffett & Chesterfield 교육구 (제4순회 항소법원, 2009)

이 사건은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어린 여아의 처우와 관련된 것이다. 그녀의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교사는 수업 시간 동안 그녀를 휠체어에 장시간 묶어 두고 무시했으며,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교육 서비스를 박탈하려는 계획까지 꾸렸다. 법원은 교사와 보조교사의 행위가 제 14차 수정헌법(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따라 보장된 ‘부당한 신체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학생의 명백히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들은 법률상 자격적 면책(qualified immunity)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미국과 한국의 절차적 보호에 관한 항목 비교

주목 항목	미국 (뉴욕, 텍사스)에서 중요성	한국 제도와 비교 - 유사점 혹은 차이점
서면 통지 및 내용의 명확성	학교나 교육구는 부모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평가, 배치, 서비스 변경, 징계 관련 변화 등이 있을 때 반드시 prior written notice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함. 부모의 권리, 평가 결과, 독립 평가,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상세하게 명시됨.	특수교육법 제16조에서 평가진단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통지 의무가 있고,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됨. 하지만 미국 통지서처럼 분쟁 절차, 중재, 청문회 등의 구체적 절차가 포함된 보호 통지(form)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한국은 제도적으로 부모 동의, 통지, 의견 제시 등의 기본 절차가 법에 있음.
부모의 동의	평가나 서비스 제공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통지됨. 특히 IEP 또는 ARD 회의, IEE 요구 등의 권리가 포함됨. *ARD 회의 = IEP 회의(텍사스식 표현) IDEA 연방법에서 정한 IEP 회의 절차를 텍사스에서는 “ARD Committee meeting”이라 부르는 것 뿐이며, 회의의 목적·권리·법적 효력은 동일함.	한국에도 평가진단 전 보호자의 의견 및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통지 전에 부모의 참여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법에 있음. 다만 ‘독립 평가’를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중재(mediation)’ 같은 비공식 분쟁해결 절차가 법적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음.
분쟁 해결 및 이의 제기 절차	부모가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재(mediation), 공청회(duel process hearing), 주/state complaint, 항소(state review) 등의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됨. 또한 일정 시한(time limit), 청문회 요청 방법, 변호사 비용(attorney’s fees) 등 구체적 절차가 통지서 안에 포함됨.	한국에서는 ‘진단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의견 진술권’ 등이 보장됨. 그러나 미국처럼 ‘공청회(duel process hearing)’나 ‘중재’와 같은 법적 청문 절차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지는 제한적임. 한국에서는 보통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 이의제기, 민원 제기 등의 행정 절차가 가능하나, 미국만큼 절차적 보호가 강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법 문서에 포함된 형태는 덜 일반적임.
언어 및 이해 가능한 방식 제공	부모의 모국어(native language) 또는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 제공, 번역본 또는 통역 제공 등이 필수로 강조됨. 특히 뉴욕주는 다양한 언어 번역본 제공함.	한국은 한국어가 기본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호자는 한국어로 통지받는 것이 일반적임. 다문화 가정 등 보호자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경우에 통역 또는 번역 제공 여부는 지역 교육청, 학교 정책에 따라 다름. 법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조항은 있으나 다국어 또는 대체 의사소통 방식 제공 조항은 명확히 규정된 경우가 드물.

<p>시한 및 절차적 시간 제한</p>	<p>이의신청, 청문회, 중재, 항소 등에 일정 기간 내 행동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time limits)이 있음 (예: 불만 제기 기한, 심리/청문회 신청 기한 등). 부모가 늦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p>	<p>한국 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통지 및 평가 등의 절차 시한(예: 진단평가 후 통지 30일 이내, 통지 후 2주 이내 결정 등) 등이 정해져 있음. 하지만 이의 제기 등 분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시간 제한이 제도적으로 통지서에 일관되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기관별로 차이 존재.</p>
<p>대체 배치(interim placement) 및 서비스 유지(stay-put)</p>	<p>부모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자녀가 기존의 배치 또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stay-put or interim placement) 보장이 있음. 이는 자녀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p>	<p>한국 법에는 “기존 서비스 유지” 조항이 미국과 같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보호자 의견 진술 및 통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변경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의견이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미국의 ‘청문회 중 배치 유지’와 같은 제도적 보호는 통상 기준보다 덜 구체적임</p>

6. 미국의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미국에서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부모 단체적인 성격을 띤 기관들이 다양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아동과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1) 부모를 위한 정보와 자원을 위한 센터(Center for 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CPIR)

미국 연방정부(특히 미 교육부, 특수교육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전국 부모지원센터 네트워크의 허브이다. CPIR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들이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상의 권리, IEP 절차, 전환계획, 관련 서비스, 중재·분쟁 해결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된 안내서, 자료, 웹콘텐츠, 번역자료를 개발·배포한다. 또한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각 지역 부모센터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최신 특수교육 법·정책·최선의 지원 전략 등을 숙지할 수 있게 전문연수, 세미나, 기술 지원 제공을 하고 있다. 부모 옹호 및 권리 강화를 지원하여 부모가 자녀의 IEP 회의 참여, 평가 동의·거부, 서비스 변경 이의 제기, 중재 및 청문회 신청 등 절차적 권리(procedural safeguards)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다국어 번역 자료, 문화적 적합성(cultural competency)을 가진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센터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곳에 따르면 미국에는 거의 100개의 “부모 훈련 정보 센터(Parent Training and Information Centers(PTIs))”와 “지역 부모 자원 센터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s (CPRCs)”가 있으며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0-26세의 장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함
- 아동의 교육과 발달에 효과적으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 장애아동을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책 개발자와의 협업 강조

장애 아동과 가족이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때 부모가 상담을

요청하기도 한다.

2) 전국 부모 변호사 및 옹호자 협의회(Council of Parent Attorneys and Advocates, Inc, COPAA)

COPAA의 사명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법적·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COPAA의 주요 목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옹호 활동의 우수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COPAA는 부모와 교육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장애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다음은 COPAA의 주요 활동이다.

- 법원 및 행정 절차에서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 제출
- 부모 및 옹호자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온라인 자료 제공
- 주·지역 부모센터(PTI/CPRC)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옹호 네트워크 운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조직되고 주요 활동은 회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완성됨.
-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변화를 공동으로 이끌어냄.

3) 연구기관협회를 통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미국의 연방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DD Act, 1975)’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연구기관을 52개주 모두에 의무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학대와 방임, 경제적 성적 착취, 법률 및 인권의 위반으로부터의 보호와 독립적인 삶을 돕고 있다(백은령 외, 2019)^{1, 8)}. 백은령의 연구에서 뉴햄프셔 주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정부발달장애인위원회 (Th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CDD)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자원 찾는 온라인 소스 제공(‘Stepping Stones’)
 - ✓ 자기 옹호그룹 조성(‘SALT’, ‘People First of New Hampshire’등)
 - ✓ 장애인연구소(‘IOD’)
 - ✓ ‘IOD’는 장애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
 - ✓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 장애인권센터
 -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 ✓ 학대와 방임 방지하기 위한 주 단위의 보호 및 지지 시스템 설립에 대한 규정
 - ✓ 2018년 특수교육, 접근성, 고용 차별,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분야에서 주 전역에 걸쳐 약 600명의 장애인에게 법률 자문이나 법정대리를 수행함.
 - ✓ 발달장애인(성인 및 아동)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PADD)
 - ✓ 정신질환자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PAIMI) Program)
 - ✓ 개인 권리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The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8) 백은령, 이민규, 유연희, 임효순(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 탐색: 미국 뉴햄프셔 주(State of New Hampshire)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연구**, 10(1), 1-38.

Rights (PAIR) Program)

- ✓ 보조기기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 (PAAT) Program)
- ✓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ABSS) Program)
- ✓ 외상성 뇌 손상 환자 보호 및 옹호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PATBI) Program)
- ✓ 투표 접근프로젝트의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 (PAVA) Project)

이 밖에 뉴햄프셔 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로 조기지원 서비스부터 21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START(Systemic, Therapeutic, Assessment, Resources, and Treatment)services'는 발달장애인과 정신건강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과 자립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 모델이다(백은령 외, 2019).

7. 시사점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전해 왔다. IDEA는 적절한 무상교육 제공과 최소제한환경이라는 이상적 가치와 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수립한 IEP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IEP의 위반 사항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를 통해 법적 대립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송세련과 게디, 2024)⁹⁾. 미국의 IDEA는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장애 학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송세련과 게디, 2024).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는 부모와 장애 학생의 민권법적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은 부모와 학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대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도록 동기를 부여했다(송세련과 게디, 2024). 뉴욕 주의 특수교육 적법절차와 관련 판례들 그리고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의 축적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확보되도록 더욱 IDEA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사례 중 개별화 교육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미국의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해보면 미국의 1982년 판례에서 '적합한 교육'의 기준을 최소한의 교육적 혜택(educational benefit)을 보장하는 정도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2017년의 소송에서는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도전적이고 진전된 교육적 진보(substantive educational progress)"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IEP의 목표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

9) Song, R., & Goedde, P. (2024). 미국의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고 = Impact of the U.S. Special Education Due Process Hearing: Do We Need It in Korea? **경희법학**, 59(4), 401-432

이 형식적인 문서 상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애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실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촉진했다.

둘째, 중재 및 분쟁 합의를 위한 기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공교육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6조의 심사청구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뉴욕주의 ‘절차적 보호 통지’ 내용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 중재와 분쟁 합의를 도모하는 과정을 자세히 밝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뉴욕주의 경우, 적절한 중재자는 지역사회 분쟁해결 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CDRC)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중재자는 부모와 학교 측에서의 구성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심리, 법학, 재활 등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부모 교육 및 권리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

IDEA의 Parent Training Center 모델을 도입한 것이 그 예가 되겠다. 부모를 위한 정보와 자원을 위한 센터(Center for 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CPIR)와 무료 법률 상담 등은 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CPIR은 다른 문화권의 학생을 위해 최신의 법과 정책, 그리고 최선의 지원전략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며 문화적 적합성을 가진 자료 제공에 힘쓰며 각 지역의 부모 훈련을 돕는 센터들을 훈련 시킨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권 확보는 법적 체제의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권리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IEP 회의는 IDEA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 목표와 지원 내용을 학교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의 참여는 미국만큼 강조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적 참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견이 있을 경우 중재와 합의를 거쳐 적법적 심사청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침해시 진정 및 조정 등의 행정청의 내부 절차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비협조적 행위로 보는 문화적 압력이 상당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상적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무시 못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참여 면에서 아동과 부모의 교육 권리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COPAA와 같은 단체 등 전문 법률 지원체계도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교육권 확보는 법제의 구조와 권리 문화의 고양 그리고 전문적인 여러 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

-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국회 간담회 요약자료
-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 주요 참고 문헌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국회 간담회 요약자료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 자료를 요약해서 실었다. 간담회 전체 자료집은 국회 도서관, 아름다운재단, 장애인교육아올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광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천교육너머, 민주장애포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한국뚜렛병협회가 공동주최하였다. 간담회 개최식에는 강득구 국회의원(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1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초안 중간 간담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은(한국뚜렛병협회 운영위원, 뚜렛(투렛)장애 양육자)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에 따르면 틱장애 2만 5천명, 뚜렛장애 약 1만 3천명이지만 교육지원과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증상이 가장 심한 아동과 청소년기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순회교육 등의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및 제도적 확장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선희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은 장애 영아기, 영·유아 검진 시기별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한 달 이내에 부모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지하였다. 이는 장애를 알게 된 이후 ‘정상’이라는 기준에 아이를 맞추기 위해 의료적 전문가인 의사와 치료사에게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다양한 도전행동에 대한 경험과 풍부한 교사들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교사 간 사례 기반 워크숍,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별 컨설팅팀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애청소년 등의 사춘기에 대한 감정조절프로그램, 정신건강전문가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고 도전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언어 폭력이 아니라 학생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 특수교사(인천 청인학교)는 조기 개입의 국가 책임 명문화, 가족지원 체계를 단발성 프로그램에서 생애주기 로드맵으로 전환, 교사 정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하향이 교육권 보장의 전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자격·고용·관리 일원화(교육청 전담 조직: 학교지원과 등에서 관련 업무 총괄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신청 및 지원 가능하도록,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정상화, 통합교육 구조적 재설계(협력수업 시수 의무화, 일반담임-특수교사 공동계획 시간 보장,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보조공학·보완대체의사소통 예산 목적사업 분리), 일반학교 심리안정실 도입, 인천 사례와 같이 “임의 기준”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에 대해선 감독·감사와 제재 수단을 분명히 해야 법을 어겼을 때 책임이 따르는 구조가 실효성을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부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은 몇 십 년 전의 선진국만도 못한 대한민국에서, 개별화교육계획과 개별화 교육협의회 회의를 통한 학대 행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 중재절차도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교육 행정절차가 한국의 현실이라고 언급하였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장애아동에 관한 학대의 의심 정황이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부모에 의한 녹음을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만한 경우까지만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발제문에서 일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대행위를 억제할 최소한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차성안 부교수는 권리 구제 관련해서 장애 입법 방향도 제시하였다. 현행 심사청구 대상으로 개별화교육에 관한 내용들(작성, 수정, 시행, 구성,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1단계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사청구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저출산 시대, 장애아동 출산이라는 위험에서 국가는 장애인에 대해 무책임하고, 사회와 언론은 장애아동 혐오를 키우고 있다고 밝히며, 애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가입기 부부들의 선택은 장애아동 출산의 (한국에서는 철저히 개인화된) ‘위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2부 간담회는 박경옥 교수(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한국특수교육학회 이사)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은원 활동가(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청소년과 특수교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청소년(장애인 등)은 120,735명이며 이들 중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과 청소년은 29,427명이다. 현재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28,445명이고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 실무사, 특수교육 지도사 등)은 16,935명이 배치되어 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중에서 사회복지무원 4,717명이며 무급 자원봉사자는 1,688명이다. 매년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청소년(장애인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특수교육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일반학교(유·초·중·고) 일반학급(통합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 19,53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50% 감축 및 특수교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 19,53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55명 배

치되어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69,908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1,289명이 배치되어 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31,02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5,391명이 배치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기준으로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를 살펴보면 일반학교 4,628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6,188명, 특수학교 2,365명, 특수교육지원센터 6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치 기준에 의하면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3,248명이 필요하고 중도중복장애 1명당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할 경우 937명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14,185명의 증원, 특수교육법 개정, 교육부의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학급당 1명 이상 배치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1:1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속 수당 상한 적용을 없애고 지역별 차이가 큰 특수교육 지원수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직무연수, 방학 중 근무 등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여 안전한 장애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방세라 학부모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아동 및 청소년과 중증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5년 교육부에 따르면 건강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1,924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819명(99.5%)의 건강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건강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방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교복지프로그램 지원(개별화건강관리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계획 반영, 학습격차를 메우는 개별화된 학습지원, 학생·학부모의 소통과 의견 반영),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연계 및 원격학교 교사의 책무성 강화, 건강장애학생 평가방법 개선을 제안하였다.

중증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 실태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매년 3월이 되면 보호자는 학생들의 알레르기 관련 조사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답변에서도 드러났듯, 교육청 차원에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집계도 하지 않으니 대책 마련에도 활용되지 않는 조사라면, 이 조사를 왜 하고 있는지 의문지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300,836명의 학생 중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14,343명으로 총학생 수의 4.77%이고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은 418명으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어떤 교육적 필요와 요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교육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식품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개선 방

안으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대체식을 포함하는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 급식 체계 마련, 모든 교사·교직원의 식품알레르기 교육 의무화, 건강장애학생 편입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간담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은진 활동가(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당사자)는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다고 밝히며, 친구들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선생님에게도 마음 아팠던 적이 많다고 말했다. “누구는 잘 하는 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반 학생들보다 부족하니까 대학 못 간다”, “너 같은 게 대학 갈 자격이 있냐, 차라리 취업이나 해라” 같은 심한 말을 들었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학년 구분없이 배치된 특수학급)수업 시간에 제가 못 할 때마다, 후배들 앞에서 저를 혼내고 이유도 없이 책상을 던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핸드폰 검사를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화내면서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린 적도 있어요. 정말 학교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받기 힘들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이 너무 빠르거나 감정적으로 들리면 발달장애학생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무섭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 모두가 발달장애학생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선영 기획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교사와 자녀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내밀한 일상의 영역도 존중받으며 지원받는 것이 특수한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 등에게 권리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도를 점검하여 그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부모를 진상 민원인 취급하며 교사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합교육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노래 같은 것에 비유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다르게 한국은 특수학교 및 분리된 특수교육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포용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한국의 통합교육이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 후 통합 모델에 고착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소속 학생의 83.8%가 일부 교과에 한해서만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현실은 이 모델이 일반논평 제4호가 정의한 통합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포용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을 자연스럽게 특수학교 이외의 선택지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떠밀리듯 가야 하고 중국에는 가족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령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지식의 전수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양한다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영란 특수분과장(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은 최은

원 활동가의 발제는 특수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치와 제도 분석, 정책 제안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전달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 현장과 제도 설계에서 ‘특수교육지도사’는 존재하지만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학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체를 지지하고, 행동을 중재하고, 의사소통을 도우며 교육지원을 실천해왔지만, 법과 예산, 정책에서의 지위는 늘 한참 뒤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제는 단지 처우개선의 요청이 아니라, “특수교육지도사도 특수교육의 한 축이다.” 라는 존재 선언에 가까운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 의견으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를 “보조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역할”로 개정해야 하며 이는 직무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상징적 전환이라고 강조하였다. 직종 명칭도 ‘특수교육지도사’로 통일이 필요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에 특수교육지도사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연수는 선택이 아니라 직무상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위한 현업업무 지정이 시급하고 특수교육 지원수당의 전국 기준 통일, 현재 특수교육 지원인력 구성이 사회복무요원, 무급 자원봉사자 등 비상근 및 단기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중심의 구성 전환과 기본급 인상 및 근속수당 상한폐지 등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이름 붙이고, ‘법적 공백’을 제도화로 채우며, ‘지역 격차’를 기준 통일로 해소하고, ‘특수교육지도사의 건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울타리로 보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지원인력 문제라고 밝히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현재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지원인력 확충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추가’ 확충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원인력의 경우 학교 생활 중 큰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장애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도리어 학생의 자립도를 낮추고 의존도를 높여 장애학생 교육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인 ‘현재와 미래의 자립적인 삶에 대한 준비’와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도는 근본적으로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모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학생, 교사, 지원인력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인력 역할에 대한 근본적·체계적 재정립 또는 지원인력 제도 자체의 일몰과 활동지원사 제도 확대 등 대안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명	주요 활동	웹 사이트	연락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신 특수교육 정책 및 관련 문의 등	https://www.moe.go.kr/user/detailRenew.do?deptCD=1342355&m=0604	044-203-6554
국립특수교육원	최신 특수교육 통계 및 관련 행사 등	https://www.nise.go.kr/main.do?s=nise	041-537-150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인권침해 조사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s://www.humanrights.go.kr/	02-2125-9700
장애인교육아울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 활동 등	https://www.aalda.org/	02-3280-971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복지 및 교육권 보장 활동 등	https://www.bumo.or.kr/	02-723-4804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복지 및 교육권 보장 활동 등	http://www.kpad.or.kr/	02-6959-2515
한국뚜렛병협회	뚜렛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	https://kotsa33.tistory.com/	ko-tsa@daum.net
세이프 알레르기 모임	건강장애 및 중증식품알레르기 정보 공유 및 교육권 확보 활동 등	https://cafe.naver.com/safeallergy?tc=shared_link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s://www.ddask.net/	02-732-342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cowalk.or.kr/	02-2675-5364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s://www.now.or.kr/	02-3477-0575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s://duroo.org/	02-6200-185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 구제 활동 등	https://www.naapd.or.kr/	02-6951-1790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인 대학생 및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 활동 등	https://www.facebook.com/eduable/?locale=ko_KR	010-2729-4804
온맘	장애아 자녀 및 장애부모 종합지원 활동 등	https://www.nise.go.kr/onmam/front/M0000025/content/view.do	041-537-1500
중앙장애이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정보 등	https://www.broso.or.kr/mainPage.do	1800-5921
한국특수교육학회	최신 특수교육 연구 및 행사 등	https://www.ksse.or.kr/index.ink	02-3277-2457

주요 참고 문헌

<1장 장애인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침해>

강혜경, 김정연, 김주혜, 박은혜, 이명희, 이영선, 임장현, 표윤희(2024).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8).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20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임재홍, 권혜령, 류은숙, 염형국(2020). 인권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장운용, 강성리, 엄선희, 원영미(2023).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서울: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아올다(2025).

장애인교육아올다(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4. 12.. 서울: 국회의원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2장 교육받을 권리 및 권리 구제 제도>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년도 일부개정)

이영란·김광병,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한 학교 내 인 권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1호(2020.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장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복지지원 제도>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청소년1388 홈페이지(<https://www.1388.go.kr>)

<4장 미국의 특수교육 갈등 중재 제도>

뉴욕주 교육부,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P-12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part B,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programs/special-education/procedural-safeguards-notice-korean.pdf>

백은령, 이민규, 유연희, 임효순(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 탐색: 미국 뉴 햄프셔주(State of New Hampshire)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연구, 10(1), 1-38.

Law Office of Anne I. Treimanis, LLC

<https://spedlawyers.com/important-special-education-cases/>

<https://www.copaa.org/>

<https://www.parentcenterhub.org/>

Song, R., & Goedde, P. (2024). 미국의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고 = Impact of the U.S. Special Education Due Process Hearing: Do We Need It in Korea? **경희법학**, 59(4), 401-432

<부록>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2부 간담회 발제 1

교육기본법. 법률 제 18456호.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저자.

교육부(2021).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교육부(2022).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교육부(2023).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교육부(2025).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교육공무직본부(2025). 특수교육 지원인력 노동권 확보 방안. 서울: 저자.

국가인권위원회(2025). 인권 증진 토론회. 서울.

김문수 의원실(2024)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서울: 국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20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엄선희(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의 교육권”, 2022 하반기 KoDDISSUE,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12.

이혜영(2024).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사례로 보는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 서울: 초록평권.

임재홍, 권혜령, 류은숙, 염형국(2020). 인권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장윤용, 강성리, 엄선희, 원영미(2023).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서울: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아올다(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4. 12.. 서울: 국회의원회관.

장애인교육아올다(2025).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면담조사. 서울: 장애인교육아올다.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William L. Heward, Sheila R. Alber-Morgan, Moira Konrad. (2021).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김진호, 박재국, 방명애, 서효정, 유은정, 이효신, 한경근 역(2022). 최신특수교육: 제1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2부 간담회 발제 2

- 경상남도 교육청(2024).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교육부(201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방안 연구. 세종: 저자.
- 교육부(2025).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 교육부(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저자.
- 구영산(2021). 건강장애학생 대상의 평가 개선에서의 쟁점-학습자 및 학습 환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2021년 한국독서학회·한국학습장애학회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564-594.
-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89-314.
- 김지연, 노종욱(2020). 전북지역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자의 학교유형에 따른 식품알레르기 관리실태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한국영양학회, 53(3). 329-345.
- 박경옥, 오원석 (2012).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들이 인식한 병원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117-140.
- 박인숙(2020).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복지지원모형 개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2025). 체육활동 소외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토론회 자료집.
- 윤주연(2017). 건강장애 학생과 부모의 교육 참여 경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애인교육아올다(2023).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권리 찾기 가이드북**

발행일 | 2025년 12월 26일

발행처 | 장애인교육아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B동 901호

문의 | 02-3280-9714, 010-9725-1917

E-mail | aalda21@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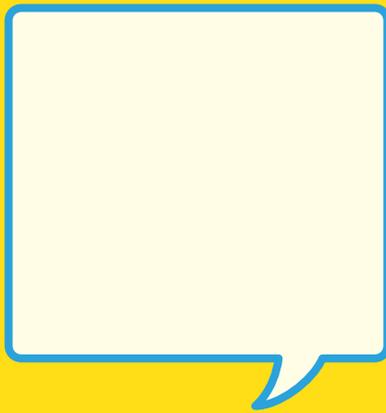
회원가입 | <https://forms.gle/6c34PmgSXQ5mhEd26>

홈페이지 | <http://www.aalda.org>

후원계좌 | 농협 351-1170-6317-13(예금주: 장애인교육아울다)

장애인교육아울다의 공익활동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 아름다운재단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과 회원가입이
장애교육아올다 활동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51-1170-6317-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B동 901호
02-3280-9714, 010-9725-1917 / aallda21@daum.net
<http://www.aallda.org>